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1월호(통권 제16호)

특집 새 정부 출범 - 예측과 대응

공개토론회 법조비리 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노동위원회 발제문 개정 노동법과 산별노조

자료 외환위기의 원인과 IMF 구제금융의 영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영구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1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 자유 투호주제

차례 (98년 1월호)

시론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 최영도 • 4
특집	
새 정부 출범 - 예측과 대응	새 정부의 인권 및 법제 개혁 과제 - 천정배 • 9 IMF 체제와 재벌 개혁 - 김석연 • 15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으련만… - 김기중 • 30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박래운 • 34
공개토론회	법조비리 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45
감옥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보슬아, 사랑하는 혜수야 - 서준식 • 60

자료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외환위기의 원인과 IMF 구제금융의 영향 - 장상환 • 67
노동위원회 발제문	개정 노동법과 산별노조 - 최원식 • 106 병원노련 산별노조 건설 현황 - 강영삼 • 113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 토론 • 121
기획소송 소장 등	변호인 접견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 최병모 • 124 무죄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즉시석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외 - 최병모 • 127
사무국 보고	• 141
성명서	전두환, 노태우씨 사면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 • 147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최영도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수립 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병행'을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당선자는 요즈음 국가부도위기에 처한 경제 살리기에 매달려 다른 분야 특히 인권에 대하여는 여념이 없는 듯하다.

김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심수를 포함하여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하여 인권관계에 관하여 침묵을 한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IMF 경제 하에 대량실업을 코 앞에 둔 노동자의 인권, 가혹행위 근절과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형사절차상의 인권,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 장기수문제 등 인권문제가 산적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권 현안은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므로 나는 김당선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꼭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바란다.

국가보안법은 199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률이며, 광범위하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그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위반되는 악법이라고 비난받았고, 그 적용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가안보보다 정권 유지의 유용한 도구로 빈번히 악용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 총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알고 집권하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가 집권 후에 폐지하기는커녕 군사독재자들보다 더 이 전가의 보도를 잘 휘둘러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양산하였다.

그리므로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국내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막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여왔다.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김대중 당선자가 처음에는 폐지론의 입장에 섰다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고 하여왔고 최근에 자민련과 연합하면서 법을 존치하는 입장으로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당선자의 이와 같은 방향선회는 아마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보수계층과 언론의 반발로 득표에 방해가 된다는 선거전략 때문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아래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는 법조치론은 형법상의 내란죄, 간첩죄 등에 몇 가지 보충입법만으로도 국가안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족함이 없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형벌법규의 기준에 비추어 그 내용면에서나 적용면에서 대표적인 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그 존치논거의 타당성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양심수를 사면, 복권하고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 바란다.

김대중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어떤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가 경쟁후보들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과거정권이 단행하였던 사면의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달라며 애매한 태도로 양심수문제의 본질을 비켜나갔다. 이러한 양심수공방에 즈음하여 정부는 우리나라에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가 있을 뿐 양심수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심수가 있는 나라 치고 양심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부는 없고, 양심수가 없다고 강변하는 나라 치고 양심수 없는 나라는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위반죄로 구금된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며 그들 중 적어도 수백명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양심수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면위원회와 국내 인권단체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양심수들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하루 빨리 사면, 복권되고 그들에 대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재심하고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사람들은 법무부령인 수형자 분류 처우규칙과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공산주의자로 단정되어,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고 전향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반수형자에게 부여된 각종 권리를 제한하고 가석방의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사상전향제도는 199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국가가 개인의 신념과 생각을 알고자 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비전향 장기수에 대하여 일체 누진처우를 하지 않는 것과 독거수용을 하는 것은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위반된 것이라고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상전향 거절을 이유로 40년 넘게 복역하는 세계 최장기수가 우리나라에 여러 명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모처럼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당선자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는 실로 크다. 그러나 인권문제에 관한 한 김당선자는 과거의 어떠한 주장과 태도에도 얹매이지 말고 앞서 본 두 가지만은 꼭 이루어 우리나라의 인권을 한 차원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
-

새 정부 출범 - 예측과 대응

새 정부의 인권 및 법제 개혁 과제

천정배(국회의원·변호사)

1. 새 정부의 성격과 개혁

정권교체는 50년만에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수평적인 권력 이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 분수령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이다. 정권교체의 결과 집권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대, 집권세력의 독선·독단·독주로 민주주의도 경제도 모두 망친 시대가 마감되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지닌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50년 동안 국가권력을 장악해온 기득권 세력과는 전혀 달리, 중산층과 서민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닌 정통민주세력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의 중심과제는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기득권 세력에 의해 왜곡돼온 국가·사회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개혁 과제 중 인권 및 법제개혁 관련 분야에 대해 살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혁의 토대가 될 과거청산과 법조 개혁 방안, 권력형 부

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 개혁 과제, 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 개혁 방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인권정책의 순으로 기술하겠다.

2. 과거청산의 과제

과거청산 문제는 새 정부 개혁작업의 토대이자 그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는 김영삼정권 하에서 때로는 선언적으로 때로는 왜곡된 형태로 진행된 과거청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수십년간 군부독재 치하에서 불법적으로 탄압을 받거나 희생된 사람이 수없이 존재한다. 광주항쟁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죄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 사람들, 언론통폐합등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 회사를 빼앗기거나 강제 해직된 사람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죽음에 이른 사람들 등등이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직도 사법부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아 공식적으로는 범죄인으로 낙인찍혀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새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행하며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덕적으로 요청될 뿐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다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상당 정도 유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법조 개혁 과제

가. 검찰의 개혁방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검찰은 지연 또는 학연에 얹매인 인사, 검찰의 권력자 눈치 보기, 정치권력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관여, 권력형 비리·대형 부정부패사건·선거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피 또는 편파수사 등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실패하였다. 즉 수사관행이나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5, 6공 하의 검찰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검찰이 대통령에게 완벽하게 장악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리고 검찰은 행정부 내의 법무부에 속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은 법무부장관은 물론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검찰을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지금까지의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검찰은 숙명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하며, 검찰 스스로도 보신과 눈치보기의 타성을 버리고 겸허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간섭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고, 일반적 지휘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는 정도면 충분하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못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검찰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찰·재야법조·민간 전문가 등으로 검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수사 검사의 올바른 소신을 꺽고 상급자가 권리자의 의도대로 지휘, 악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검사장 등이 수사검사를 교체할 경우 또는 상급자가 수사검사의 소신에 반하는 명령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 책임의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검찰의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이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법대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 노동문제나 학생운동에 대해 인권보장의 견지에서보다는 공안적 시각에서 다루어왔던 잘못된 관행도 시급히 고쳐야 한다.

제도적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현재 재정신청제도는 그 대상이 공무원·검찰·사법경찰관에 의한 직권 남용, 불법체포 및 불법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범죄와 공직선거 및 부정

선거방지법의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 기능을 심대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그러나 유신 직후인 1973년 비대의기관인 비상국무회의에서 재정신청 대상이 대폭 축소되기 이전에는 모든 형사범죄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있었고, 현행 군사법원법도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경계하고 불완전한 권리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사건, 정치적 의혹사건 등을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

나. 법원의 개혁방안

법원은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이기에 인권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그러므로 법원은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 긍지를 가져야 하고, 국민들 특히 서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과거 사법부는 정치적·사회적 강자의 편에 서거나 영향을 받아 힘없는 서민들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외면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오해나 과장의 산물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 합당한 평가인바,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조치가 있어야 한다.

먼저 법관의 충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서민대중의 삶을 제대로 알기에는 너무 짧고, 충실했던 재판을 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법관 임용은 대체로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관을 회망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으로 결정되는데, 특히 나

이가 많거나 시위전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 20세 초중반에 법관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전체 법관의 2/3가 20~30대인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예컨대 미국의 재판관은 변호사, 교수, 검찰관, 공무원 등이 보통 선출되고, 그들의 실무경력은 대개 5~10년이고, 평균연령은 40세를 넘고 있으며, 종신직이고 전근을 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판관은 인생의 경륜이 있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이 직접 인권의식 등 종합적인 인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상당기간 경험을 쌓은 인사 중에서 법관을 선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수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법부가 관료조직화되어 있는 것도 법관의 독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사법부의 관료화를 강화시킨 주된 원인은 고등법원 부장과 그 이하로 구분되어 있는 법관의 세분화된 직급제도와 그에 따른 승진제도이다. 현재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2년 주기로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은 전근 및 승진이다. 이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5, 6년 근무제도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미국 등 외국의 일반적인 종신직에는 너무도 먼 관행이다. 직급제의 폐단을 없애고 찾은 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정년시까지 같은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법원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적 임무로 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중한 구속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 견지, 구속피고인에게 무죄추정에 걸맞는 대우와 방어권 행사 보장,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법연수생과 법관 등에 대한 인권교육과 연수 강화 등이 이루-

어져야 한다. 법관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법관들 스스로가 특권의식과 권위주의를 벗어내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봉사하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특히 부폐하지 않고 독립된 법관, 유능하고 전문적인 법관, 힘없고 돈없는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관행 확립

작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속자 수 비율은 아직도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구속된 사람 4명 가운데 1명 꼴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되고 있고, 구속적부심에서도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풀려난다. 그나마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3명 중 1명 꼴도 안된다. 범죄혐의자를 가능한 한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억울한 옥살이를 양산하는 토양이 된다. 무리한 인신구속은 당사자의 일상 업무를 마비시키고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등 비인간적인 폐해까지 초래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조 전체가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제도와 관행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법조비리 척결

제도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법조계 자체의 비리 척결이다. 법조비리는 판·검사, 변호사, 법조계 종사자, 경찰 등 법원 주변과 재판과정에 얹힌 부조리, 탈법행위, 비합리적인 것 등을 말한다. '전관예우'와 '브로커 고용'이 대표적인 양태이다. 판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변호사들은 자신의 퇴임지에서 개업을 하여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이 남아 있을 때 수임건수와 '실적'을 높여 명성과 돈을 얻기 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가 혐직에 로비를 하고 사건브로커를 고용한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의정부 지역의 이모 변호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곳 법원 출신으로 경찰, 검찰, 법원 출신 외근 사무장을 각각 고용해 2년여간 무려 220여건을 소개받아 17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겼고 이 중 2억6,000만원을 알선료로 뿐였다고 한다.

법조인들의 암묵적인 공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전관예우등 법조비리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법조 전체의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것이므로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최근 변호사의 브로커 고용등 수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변호사업계의 자정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자정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리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 그리고 변호사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제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전관예우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개업지 및 관련사건의 수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규정을 두어야 한다.

마. 사법감시, 비판기능 강화

참여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활동이 투명하게 국민의 감시 하에 놓여져야 한다. 시민단체, 인권운동단체 또는 뜻있는 시민들의 재판감시활동을 통하여 권위적이거나 무성의

하고 무능한 재판을 추방하여야 한다. 관행화된 갖가지 법조비리와 제도적 불법형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시민의 기준에서 법관과 검사에 대한 인사자료를 만들어, 장차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는 단순히 재판과 검찰활동에 대한 개별 모니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조는 매우 관료화되어 있고 국민 참여가 배제된 폐쇄적인 전문가집단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국민들이 바로 배심원으로 참여하거나 직업법관과 나란히 재판하기도 한다. 또 국민의 뜻에 맞는 법관을 선출하는 예도 있다. 우리나라만 일반 시민들이 사법권과 검찰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민주국가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사법권이나 검찰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새 정부의 법제 개혁 과제

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개혁

새 정부는 오랫동안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온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먼저 검은 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돈세탁방지, 음성적인 로비활동의 통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경경유착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선거를 완전 공영제로 실시해야 한다.

나. 신권신장을 위한 법제개혁

10월유신과 12.12, 5.18 등의 쿠데타 직후 그 주도세력이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정치시키고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비대의(非代議)입법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설치해 수많은 법을 만들거나 고쳤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률의 1/3에 이르는 약 1,500건이 국회가 아닌 그런 이상한 곳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가운데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제약하는 법들이 많다. 노동자의 권리침해하는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제3자개입 금지조항,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과 공판 전 증인신문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외에도 현행법에는 헌법에 어긋나는, 따라서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법률 규정들이 적지 않다.

새 정부는 비대의기관에서 만든 것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재정 신청 대상의 전면 확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보장, 국선변호인 제도의 활성화, 밀실수사·철야수사의 금지, 재소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 형사피고인의 법정 출정시 사복착용 허용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4. 새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

새 정부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다른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먼저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국민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장하여 다시는 이 땅에 차별로 인한 대립이 발불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 장애인, 극빈자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하고, 중요한 인권문제이자 국가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극심한 지역차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가입한 국제규약과 유엔의 권고에 맞게 국내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사법참여와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권교육의 경우 종래의 법조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절차법상의 지식 전달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인권운동단체를 지원해야 하며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에서도 인권교육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시 정부에 대한 조언과 지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규제 등의 기능을 총괄하여 수행할 독립된 중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과제 이외에도 새 정부 앞에는 갖가지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쓰러진 국가경제를 되살려야 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반발 등 새 정부의 개혁작업을 가로막거나 왜곡되게 할 부정적 요소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가 '참여 민주주의'와 '쌍방향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결국 새 정부 개혁의 성패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힘있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선두에 나서야 한다.

김석연

IMF체제와 재벌 개혁

1. 경제위기의 원인

미국 MIT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아시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논문에서 "정부가 은행을 지나친 낙천가로 만들어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¹⁾ 즉, 아시아 각국 정부가 은행의 빚을 사실상 보증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는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증과 느슨한 규제는 금융기관들이 투자위험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대출에 나서도록 부추겼고 이는 자산가격의 거품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폴 크루그먼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아시아 경제의 거품이 다 깨지기 전까지는 IMF의 구제 노력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식의 용어로 바꾸자면 결국 관치금융이 위기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위기의 현상과 원인을 단순히 관치금융으로 만들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IMF 도래 전인 1996년 한해 동안 올린 매출액은 15조8,750억원이었다

(다만 반도체사업만으로는 5조7,000억원). 세계 일류 반도체기업인 미국의 인텔사가 올린 매출액은 같은 기간 18조7,623억원이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자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경상이익면에서 삼성전자는 겨우 2,240억원을 기록한데 비해 인텔은 6조7,977억원의 이익을 냈다.²⁾ 삼성전자는 1995년 1조6,000억원(이것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축소된 수치였다고 보고 있음)이라는 막대한 경상이익을 냈지만 이를 반도체사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자동차사업 신규 진출 기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원에 쓰여져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텔은 계열사가 전혀 없다. 세계 일류기업과의 이와 같은 경상이익의 격차는 결국 재투자 여력을 소진시키고 부채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경쟁력 상실의 원인으로 되고 나아가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인 경우 외부환경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기업부도로 이어진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나 GM을 비교해보거나 현대중공업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비교해보더라도 삼성의 사례와 비슷하다.

SBC워버그증권사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1996년

1) 『매일경제신문』 98. 1. 12.자

2) 『매일경제신문』 98. 1. 13.자

국내 30대 그룹의 자기자본이익률은 평균 -2.32%였고, 10대 재벌의 경우에도 -0.88%였는데 1997년에는 환차손 및 고금리부담까지 가중돼 영업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³⁾ 우리나라 재벌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이 부(-)로 나타난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이자등의 부담을 제외하면 적자를 본다는 의미로서 재벌들의 무리한 차입경영실태와 실속 없는 외형을 보여준다. 장사를 해서 돈이 들어와도 로열티나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소가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금융업종과 관리종목을 제외한 5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1996년 5년 동안 상장기업 570개 가운데 불과 154개(27%)만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⁴⁾ 연도별로는 0 이상인 기업이 92년 35.4%, 93년 33.9%, 94년 31.1%, 95년 29.1%, 96년 29.1%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한다. 5년간 상장기업들의 매출액은 176조원에서 352조원으로 급증했지만 경제적 부가가치 누계액은 -1조9,016원에 이르러 실속없는 외형성장을 보여준다. 5년 연속 경제적 부가가치가 0

이상인 회사는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씨비스, 대우 등 32개사(6%)에 불과했다.⁵⁾ 위와 같이 재벌들이 수익 위주의 경영을 하지 않은 데에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과의 지식, 기술격차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마다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로열티를 기술도입료로 지급해야 한다. 계다가 매출액이나 자산규모와 같은 외형 외주의 성장을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과다한 차입경영을 하다보니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한다.⁶⁾ 한편 삼성전자의 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계열사 중 이익이 나는 계열사가 적자가 나는 계열사까지 벅여살려야 하므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계열사의 부도는 항상 그 계열사가 속한 전체 그룹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이 통례였다.

사실 재벌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의 독과점적 사업권의 인허가, 금융기관의 자금독식, 각종 세제지원과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이 미개방된 상태에서 독과점 가격을 통한 소비자 착

3) 『매일경제신문』 98. 1. 9.자. 자기자본이익률이란 어느 기업이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을 가지고 한해 동안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가를 나타내주는 죠도이다

4) 『한겨레신문』 98. 1. 15.자

5)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투자자본비용을 뺀 수치를 말하는데 기업이 영업활동에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상당 수익을 얻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는 등 자본을 영업활동 외의 다른 영역에 투자했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쓰인다.

6) 97년초에 부도난 한보그룹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한 과다한 차입경영의 유인은 기본적으로 재벌들이 과거 개발독재시대 내내 정부로부터 특혜적인 금융지원을 배분받아 외형 확대경영을 추구해온 데서 연유한다. 부동산 투기를 비롯하여 우월한 자금력을 기초로 한 다양한 체테크 기술에 의존한 성장방식은 기술 개발이나 전문화를 통한 성장에 비해 오히려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정부로부터 독과점적 사업권을 획득하거나 금융자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제공 외에 자산과 매출액 등 외형의 크기가 협상력을 좌우했으므로 일단은 외형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직접금융에 의존할 경우 총수들은 주식의 분산에 따른 경영지배권의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총수는 자기의 주식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면 되고 그 책임이 총수 개인의 재산까지 파급되지는 않는 반면에 자신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기업이 이익이 나게 되면 근로자나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총수가 그것을 전부 처분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므로 차입에 따른 위험의 비대칭적 전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취, 각종 하도급관계에서 중소기업 취취,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취취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초파이윤을 수취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계열사 확장 등의 외형 확대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내시장이 급속하게 개방되어감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파이윤 실현의 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재벌들은 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으로 번 돈을 문어발식 확장과 부동산 투기 등에 쏟아부었으므로 거품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 악화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몸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등한시하였으며 반대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 분야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를 지속하였다. 초파이윤의 수취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과대한 차입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재벌들은 이미 너무 비대해 있었고 비대한 몸집을 유지할 만한 수익성을 낼 수 없었다. 결국 덩치에 집착하여 자발적 구조조정을 외면한 재벌들은 막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순서로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부도 처리의 와중에도 재벌총수들은 하

나같이 경영권에 집착하여 화의제도를 악용하는 등 비윤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1997년 내내 이어진 부도 행렬은 종금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양산하면서 IMF에 의한 경제신탁통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2. IMF협약의 주요내용

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

한국의 경제위기는 상당부분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위기이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정책이 비효율적인 금융부문과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부문을 만들었다. 따라서 위기해결의 방안도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개혁에서 찾아야 하며 특히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시장규칙과 선진국의 관행을 따르는 튼튼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부문이 개혁되어야 한다.

나. 경제정책기조

주요거시경제지표	- 실질 GDP를 98년에 3%, 99년에는 잠재성장을 수준으로 회복 - 물가상승률 5% 이하로 인정 - 2개월간의 수입을 지탱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적립
통화정책	- 원화 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긴축기조로 전환 -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상승을 허용한다 -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재정정책	-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재정을 유지한다 - 재정수지균형 또는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상쇄비용을 마련한다 - 정부의 구조개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한다 - 세입측면에서 법인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 세출측면에서 급하지 않은 자본 지출이나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경상비용을 절약

다. 금융부문 구조조정

근본적인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원리의 강화 -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와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등의 노력 - 회계기준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국제기준에 따라 강화 - 대형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금융개혁법안의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을 주임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 금융감독기능 통합, 자율권과 부실금융기관 정리권한 부여
부실금융기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또는 자본 재조정안 제출, 지급불능 금융기관의 폐쇄 - 구조조정에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 포함 - 주주와 채권자간 손실을 분배하기 위한 명백한 원칙 마련 - 부실여신의 처분 가속화 - 은행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경제회생계획의 일환으로서만 주어짐 -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정부회계에 투명하게 기록 - 금융기관에 대한 어떠한 지원에도 시장지향적 조건들이 불어야 한다 - 예금 전액보장은 3년 내에 끝내고 제한적인 예금보험으로 대체
외국은행의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우호적 인수합병에 동등한 조건 하에 참여 - 종금사의 경우 외국사의 참여를 100%까지 허용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달 내에 회생계획 제출하고 넉달 내에 BIS기준 충족 - 넉달 내에 회생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결론지으면 은행 폐쇄
기타 시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3월까지 결손자산과 증권손실을 완전히 보전 - 새로운 자금의 출처와 액수, BIS기준을 충족시키는 추진일정 명시
외국 금융기관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우호적 방식과 평등 원칙 속에서 참여 - 98년 중반까지 은행 보조기관과 중개소의 설립 허용 -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주식구매는 즉각적으로 제한없이 허용
종금사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된 9개 종금사는 30일내 회생 계획 제출하고 석달 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쇄 - 나머지 종금사는 12. 31.까지 자본증자 및 기구축소계획을 제출하고 자기자본비율을 98년 3월까지 4%, 98년 6월까지 6%, 99년 6월까지 8%

라. 무역자유화

- 무역 관련 보조금, 제한적 수입 허가, 수입다변화 프로그램등을 제거
- 수입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간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

마. 자본자유화

- 상장주식 외국인 총소유상한선 26%에서 97년말에 50%, 98년말에는 55%로
- 외국 개인의 소유한도는 7%에서 97년말 50%로 상승(적대적 인수 제외)
- 적대적 인수는 다른 산업국가들의 기준에 합당한 입법조치
- 외국인들의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채권시장 접근 자유화
- 외국의 직접투자에 관한 인가과정을 단순화
- 기업부문이 직접 외국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대한 장벽 제거

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경영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받는다 - 재벌의 통합재무제표를 완전히 공개한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기준을 시행하여 기업체무제표의 투명성을 개선
관치금융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대출의 상업적 관행을 지킨다 -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정책금융(농업, 중소기업)은 유지되나 이자보조금은 예산에서 부담한다
시장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따른 파산조항은 정부의 관여없이 운영되도록 한다 -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은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범위를 줄이기 위해 약간의 개정은 하되 유지
기업금융의 구조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후반까지 구조개편계획을 마련한다 - 기업의 자산에 비해 높은 부채를 줄인다 - 기업에 의한 은행자금조달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을 육성한다 - 재벌 내부의 상호출자제도를 변경한다

사. 노동시장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 노동력의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역량을 강화

아.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

-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 제공
- 중요 경제자료의 공개와 분석 향상
- 98년 1월부터 외환보유고의 구성과 관련자료는 월말로부터 2주 안에 공개
- 부실여신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 자본구조, 소유구조와 제휴관계 연2회 공개
- 단기외채 관련 자료 분기별 공개
- 지방정부 재정에 관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98년 중반에 심사

자. 정책의 제한

- 조정기간중 정부는 새로운 외채 연체금을 늘리지 않는다
- 국제거래 지불이나 이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 또는 신설조항을 만들지 않는다
-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3. IMF의 재벌개혁 요구⁷⁾

가. IMF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한국의 금융위기는 정부의 신용(자금)할당, 기업과 은행 간의 유착에서 상당 부분 발생했다. 기업과 은행의 유착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너무 쉽게 결

7)『조선일보』 98. 1. 1.자

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냈았다. 투자 결정은 은행 책임자들의 임자금의 심사만 거칠 뿐이었고 은행 책임자들의 임명은 정부의 영향을 받아왔다.

광범위한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은행들은 상업적인 견지에서 대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은행의 대출 결정에 개입하기 힘들어지고 은행 경영진들은 직접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재벌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 행태가 해신되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결정이 보장될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은행차입의존도를 줄일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회사체시장을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규제완화는 향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하는 필수조건이다. 기업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한다.

자본시장의 매력을 증진시키려면 M&A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상장회사들의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장회사들은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업공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수단들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시장이 훨씬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금융부채를 증가시켜온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해소되어야 하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규율을 회복시키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정 개별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던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건전한 기업과 불건전한 기업을 강제로 합병시키는 일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8)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평가임

나. IMF 요구가 재벌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⁹⁾

(1) 금융긴축의 효과

일반적으로 긴축정책은 거시적 안정화정책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책의 수단이다. 특히 금융긴축에 따른 단기금리의 상승은 적정 이윤율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한편 장기금리의 상대적 하락은 우량기업으로의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품이 제거되고 한계기업이 정리됨으로써 경제가 보다 건강한 체질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기타 각종 내부거래 및 자산, 자금대여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재벌의 구조와 생산 및 유통 양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청구조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전가될 경우 금융긴축이 연쇄부도 위험을 향상화시킬 위험도 있다.

(2) 외국인에 의한 M&A의 효과

우선 재벌의 지배구조 즉 총수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금융, 유통 등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사이에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경영기법에 비해 낙후된 국내의 금융, 유통산업의 현실로 인해 상대적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무직 노동운동의 특성상 노조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조업은 국내기업의 기술력이 열위에 있고, 상대적 고임금 및 노동조합의 전투성 등으로 인해 매력적인 M&A대상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분야에는 아시아 진출의 중간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지분참여방식이 주된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외국인에 의한 M&A는 금융업과 유통업을 제외한다면 총수지배구조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외국자본의 지분참여가 이루어진 기업의 경우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재벌들의 계열사간 상호출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지만 국내기업간의 M&A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재벌들은 향후 투자결정기준으로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비관련다각화에 대한 유인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지급보증의 폐지 및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은 재벌의 외형을 상당한 정도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재벌들의 그간의 천민적 축적방식을 제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재벌이 근대적 독점자본으로 변모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당장 재벌이 해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 새 정부의 재벌정책 내용¹⁰⁾

(3) 금융산업 개편과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

IMF가 요구하는 조치들은 그동안 한국의 재벌을 발생시키고 유지하여온 근본 메카니즘이 관치금융구조와 기업집단구조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회계가 정확하게 공개되며, 엄격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하여 기업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불투명성이 제거되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기업과 기업간 거래의 불투명성 또한 제거된다면, 이것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주주, 채권자, 거래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의 상호견제기능이 작동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소유권(경영권)의 보장을 전제로 시장에서의 투명한 경쟁을 통해 소유권 행사의 남용을 막는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전체적 평가

신자유주의적 투명성 제고조치는 재벌의 전근대적 천민성에 대한 강력한 제재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규범의 적용과 상호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조기도입과 주요 재무정보의 성실한 공시를 통해 회계관행을 국제화하고 부실경영의 온폐를 방지하며 금융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한다.¹⁰⁾

이를 위해 ① 결합재무제표를 99회계년도부터 앞당겨 작성한다. ② 각종 총당금 설정기준등 회계기준

9) 『매일경제신문』 98. 1. 14.자

10) 결합재무제표란 대기업집단 소속계열사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단일 실체로 보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재무·영

을 국제수준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③ 외부 감사인의 감사 주도권을 강화하고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해 정보의 접근과 이해관계인의 감시를 강화한다. ④ 상호지급보증 등 주요 부채부채의 즉시 공시, 반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확인을 실시하고 분기보고서의 도입을 검토한다. ⑤ 사외이사와 사외감사¹¹⁾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대표소송과 회계장부열람 요건을 완화하여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

(2) 상호지급보증¹²⁾의 해소

그룹 내 기업 상호간 자금과 영업지원 관행을 원칙적으로 단절하여 개별기업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계열기업 부설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을 차단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신규 지급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잔액에 대해 2000년 3월 말까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에 대하여 5%, 2000년 4월 이후 자기자본의 100% 이내는 3%,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벌칙성 금리를 부과한다. ③

업·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관계, 상호출자관계, 자금대차관계, 담보제공관계 등이 모두 고려된다. 또 계열사 상호간 매출 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가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되게 되어 매출을 과대포장할 수 없게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현재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소유주식이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를 강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지배대주주의 개인재산까지 포함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 결합재무제표가 개별기업의 상태를 공시하는 완전한 수단은 아니므로 무엇보다 개별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11) 업무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주로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의 전문가들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

12) 상호지급보증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은 물론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국외공사 하자 보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상호지급보증이 과다할 경우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 편중이 심해지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선단식 기업경영으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계 확립이 어려워져 경제적 집중, 기업퇴출 저해 등 부작용이 있었다. 97년 현재 30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총액은 약 65조원 정도이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지급보증액수는 그 절반 정도이다. 30대 재벌의 부채규모는 자기자본의 430%인데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포함 시킬 경우 690%로 높아지게 된다.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여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업종과 자산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수익성 위주 기업경영 기조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1999년부터 500% 이상, 2000년부터 400% 이상, 2002년부터 300%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방만한 다각화에서 탈피해 주력 핵심사업부문으로 경영역량을 집중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등 수평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5) 지배주주(사실상의 지배주주도 포함)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이를 위해 ① 지배주주의 증자와 신규 출자에 대한 보증 등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② 화의절차를 도피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지배주주의 주식 상각 또는 증자를 의무화한다. ③ 경영기간 동안 자기자본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낮아지고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6) 구조조정의 원활화

이를 위해 ①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부동산 처분, 퇴출절차, 은행의 타법인 출자한도 등 제도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개혁한다. ②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출자총액과 자사주 취득한도 완화, 지주회사제도¹³⁾ 도입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한다. ③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제 등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④ 부실기업정리회사의 설립을 유도하여 기업 정리를 촉진한다.¹⁴⁾ ⑤ 각종 법률에 규정된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일괄적인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한다.

(7)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관련

① 주거래은행이 재무구조가 불량한 그룹에 대하여는 자금을 지원할 때 경영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상증자등 재무구조 개선계획과 부동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 자구계획을 제출케 하는 특별약관제도를 강화한다. ② 은행권의 협조융자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의 전문용역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등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한다. ③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금의 출자 전환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은행 자기자본의 10%로 되어 있는 출자한도를 확대한다. ④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현행 45%에서 국제수준인 2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5. 재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재벌이 가진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된다. 첫번째는 특정 대주주의 친족집단에게 집중된 소유지배구조 자체이고, 두번째는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된 가운데 내부의사결정기구의 형해화, 외부의 합리적인 견제장치 및 감시기제의 부재라는 문제이다. 첫번째 문제는 그 자체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물론 두번째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는 지배대주주의 전 일적, 전제적 소유지배구조에 기초한 폐쇄적, 독단적 경영시스템의 문제로 요약된다. 이러한 재벌들의 가부장적 대주주지배구조는 억압적 노사관계와 결합되어 지난 30여년간 한국자본주의 전근대성을 유지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소액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나 사외감사제도의 도입과 같은 경영 투명성 제고방안들은 원칙적으로 소유 집중과 경제력 집중의 문제 자체는 손대지 않는 방안들이다. 위와 같은 방안에서 그나마 실효성이 있다면 적대적 M&A 정도 외에는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은 경영 투명성 제고방안들을 도입하는 대가로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지주회사 도입과 같은 경영권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문제의 근원은 손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타당성을 떠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소유 집중의 해소 없는 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왜냐

13) 지주회사란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 관리도 하는 사업지주회사와 독자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자회사 관리만을 하는 순수지주회사가 있다. 논의되는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를 가리키는데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설립과 전환이 금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7년 상위 6대 기업집단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주회사 금지를 철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체계가 해소되지 전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14) 부실해진 기업을 전담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별도의 회사로서 부실기업들이 회의나 법정관리를 통해 악의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에서 강제퇴출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한다.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서 출연한 자금을 바탕으로 부실회사를 정리해 나가는 일종의 가교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적대적 M&A에 의한 자본시장 규율마저도 현재 재벌들의 소유 집중 상황 하에서는 결코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의 통제장치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문제점은 방식은 재벌개혁의 목표를 흐도케 할 우려가 있다. 이미 이러한 유형의 재벌문제 접근방식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된 바 있었다. 당시 세계화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집단은 그래도 재벌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재경원과 KDI에서는 재벌의 소유문제는 놔두고 경영상의 행태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안들을 쏟아낸 바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마저도 전경련등의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하였던 것인데 현재 IMF가 요구하고 있고, 김대중 당선자가 재벌 총수와 합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제안된 바 있었던 사항들인 것이다.

한편 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업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사회계약을 추진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태도이다. 정리해고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도 경영에 참여할 권한이 주어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책임만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 투명성의 제고와 더불어 소유 집중의 문제 나아가 이에 기반한 경제력 집중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재벌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영 투명성 제고방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하에서는 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재벌의 소유 집중

및 경제력 집중 자체를 완화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조 조정을 촉진하여 재벌이 경쟁력 있는 전문대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유집중 및 경제력 집중의 해소를 위하여

(1) 재벌의 주식소유 현황 및 계열사 지배구조

1997. 4. 현재 30대 기업집단에 있어 특정 대주주 친족(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8.5% 수준이다. 여기에다 계열사의 지분 34.5%를 합하여 내부지 배지분율은 43%에 달한다. 5대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내부지분율이 45.2%로 상위집단의 집중도가 더 높다. 그런데 30대 기업집단의 1997. 4. 현재 자기자 본비율은 18.2%임을 고려하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전체자본에 대한 대주주 친족의 지분율은 계열회사 지분 34.5%에 대한 8.5%의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2.36% 정도에 불과하다.¹⁵⁾ 결국 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와 같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에 있는 것이다. 즉,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이용하여 대주주 친족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중핵기업(또는 비영리재단)을 지배하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물적인 토대라면 인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은 기획조정실과 같은 그룹총괄조직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직접적 상호출자 방식만 금지하면서 경제력 집중억제 수단으로 출자총액만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상장법인의 주식 10% 이상 취득금지 조항은 비록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 시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항이었으며, 그 외에도 주식의 공개매수 제한, 의

결권 대리행사 권리 제한, 주요 주주의 주식 변동사항 공시제도,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제도,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은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던 제도들이다.

(2) 소유집중의 해소를 위한 방안들

① 상호출자의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6년 현재 30대 재벌의 상호출자금액은 순자산의 24.75%에 해당하는 13조 5,7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출자비율은 89년의 28.1%에 비해 감소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출자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율이 27.9%로 출자액 증가율 20.2%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30대 재벌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 수나 계열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소유 집중의 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는 직접적 상호출자는 예컨대 특정그룹의 A라는 회사가 1억원을 출자하여 B라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다시 B사가 A사의 주식 1억원어치를 매입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그룹 차원에서 볼 때에는 실질적인 자본 조달 없이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상호출자 외에도 환상형 상호출자와 복합형 상호출자가 이용되고 있는데 전자는 둘 이상의 기업간에 A-B-C-A와 같은 형태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직접 상호출자와 환상형 상호출자가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벌이 복합 형태로 상호출자를 하고 있다.

어떠한 유형의 상호출자이든간에 재벌의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자본 조달 없이도 상호출자를 통해 소액의 자본으로 재벌그룹의 경영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다. 또한 상호출자는 새로운 분야로의 다각화과정에서 자본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외부자금 조달의 측면에서도 대출한도를 증액시킬 수 있게 되고, 그 외에 대외 교섭력 및 공신력의 증대, 체계적인 회계분석이 가능하여 재벌은 광의의 상호출자에 집착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호출자는 기업의 실제자본이 표면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훨씬 모자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다각화의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부실화 및 연쇄도산의 가능성 을 높여주고, 대주주에 의한 소유집중을 심화시켜 경영지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킨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재벌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상호출자분에 의해 형성된 가공자본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자총액 제한보다는 이와 같이 가공자본을 창출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는 상호출자방식을 금지해야 한다. 상호출자에 의해 형성된 가공자본은 바로 우리 경제의 거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호출자가 금지되면 재벌들은 가공자본에 의한 기업확장 수단을 쓸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실력에 기초한 출자만 가능하게 되므로 무리한 다각화나 사업 확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상호출자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M&A와 같은 자본시장기제가 작동하기 힘들어 효과적인 기업 퇴출과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개혁방안 중 상호출자 해소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 은행이나 연금, 기금 등에 의한 재벌주식의 분산¹⁶⁾

이것은 재벌이 지고 있는 부채의 일부를 주식으로

15)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개혁방안」, 홍영기(국회 입법조사연구관),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16) 김기원(방송대 경제과), 「재벌의 근본적 개혁방안」

전환하여 은행이나 연금 또는 각종 기금으로 하여금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벌들도 지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은행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나 어차피 회수가 쉽지 않은 부채는 이런 방식을 통해 정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식의 분포가 바뀌면 재벌 계열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 대신 은행과 연금, 기금이 선임하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이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재벌 총수는 전체적 소유경영자가 아닌 대주주 중 1인으로 그 지위가 격하될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을 모든 재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우선 부채비율이 높은 재벌들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재벌의 경우에도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부 계열사는 재벌 총수가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재벌의 은행 소유가 금지되는 것이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나. 감사회제도 및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미국식 이사회중심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감사제도를 두고 있어 미국과도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재벌개혁방안으로 논의되는 사외이사, 사외감사제도는 부분적인 효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재벌총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내부통제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식의 감사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감사회로 하여금 이사와 대주주의 경영 전횡을 감시함과 동시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구와 감독기구의 분리 및 집행기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단순히 대주주만의 것도 또 주주만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실체이기도 하고 재벌과 같이 거대한 집단인 경우에는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거대한 실체를 사회나 국가가 방임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이 결코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일본도 최근 1993년 상법과 주식회사의 감사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법을 개정하여 감사제도를 강화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사외감사제도의 도입과 감사회의 구성,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시 감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도입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일본과 달리 대주주의 경영 전횡이 극에 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진정으로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독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감사회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회는 이사를 선임하고 임기를 연장하며 이사를 해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를 통제한다. 근로자 500인 미만의 가족회사의 경우 주주대표로 감사회를 구성하지만 광업 또는 철강생산업이고 근로자의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대표인 감사가 5명, 근로자대표인 감사가 5명, 중립적인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의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대표인 감사와 근로자대표인 감사가 동수(각각 6~10명)로 감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식의 감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현행 감사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상법적인 쟁점 이외에 노사정 대타협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최근 노사정 협약의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리해고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감사회에 경영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대타협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근로자 경영참가제도가 확립되면 노사관계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영의 민주화, 투명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룹 기획조정실의 개혁

기조실은 재벌그룹의 성장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 기조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59년 삼성의 고이병철 회장이 비서실을 만들면서부터이다. 이어 렉키금성(68년), 선경(74년), 대우(76년), 현대(79년)가 그 뒤를 이었고, 지금은 웬만한 중견그룹들은 모두 기조실을 가지고 있다.

기조실은 회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처럼 모든 정보가 집결되고 충성심으로 무장한 직원들이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한다. 계열사들도 기조실의 결정은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간주해 최우선순위로 집행한다. 기조실에 대한 논란은 이것이 그룹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 회장에게 사조직처럼 충성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편 기조실 재무팀은 회사의 재무관리와 더불어 회장의 재산 관리를 함께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금의 조성도 기조실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기조실이 있는 한 전문경영인의 입지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기조실은 재벌그룹 성장의 과정에서 오너의 독단적 판단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줄이고 그룹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지분이 적은 오너가 모든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선단식 경영을 공고화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조실 경영으로 말미암아 대주주의 각종 경영권 남용행위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외부주주, 채권자, 근로자의 뜻을 지배대주주의 뜻으로 들릴 수 있었다. 또한 기조실은 정부관료나 언론, 기타 그룹의 대외 로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선봉에 선 조직이기도 하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통해 탈법적인 2세, 3세로의 경영 승계를 뒷받침했다.

기조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조실은 상법상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권한과 책임 사이의 불균형은 형평과 효율의 문제 모두를 불러일으킨다.

기조실이 가진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벌 개혁방안 내용에 기조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검토중인 안은 대주주인 총수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는 입법과 계열사가 기조실에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기준을 만들어 이를 자의적으로 비용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정도가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는 기조실을 합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주회사란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로 불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의 주식을 지배 가능한 한도까지 소유함으로써 자회사들의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형태가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순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재벌들은 사업지주회사와 기조실을 통해 사실상 어느 국가의 지주회사보다도 더욱 강한 경영집중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지배대주주가 동일한 자본으로 훨씬 큰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그만큼 경제력의 집중과 지배권의 세습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재벌의 지위를 그대로 영속화시켜줄 뿐이므로 지주회사 허용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의 재벌이 해체되고 기업경영의 풍토가 바뀌어 재벌이 전문대기업으로 재편되고 나면 지주회사의 허용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그룹기조실을 강제로 해체시키는 방법은 없으므로 기조실 임원과 지배대주주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고 감시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권리의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는 대표소송권과 같은 대위소송의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등 주주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직접 대주주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입법이 필요하다.

라.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현재 재벌 개혁방안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문제이다. 기업 승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혈족승계와 전문경영인승계로 대별된다. 혈족승계의 경우에도 형제간의 승계와 같은 세대 내 승계(선경), 자식이나 사위(동양)에게 승계가 일어나는 세대간 승계가 있고, 자식승계의 경우 다시 장남승계와 2남 이하 승계(삼성) 그리고 자식간에 계열사를 분리하여 승계하는 경우(효성)로 나뉘며 특수한 경우에는 동업자 자식간의 분리승계(해태)가 있다. 전문경영인 승계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져 전문경영인간에 계속 경영지배권을 이전하게 되는 승계형식(유한양행, 기아)과 자식승계를 위한 과도기적 준비단계로 전문경영인이 일시적으로 경영지배권을 확보하는 과도기적 승계(해태, 두산)가 있다.

조동성¹⁷⁾이 1990년 국내 50대 재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개 재벌 중 이미 22개 재벌이 기업승계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23개 재벌 중 22개 재벌이 혈족승계를 하였으며, 혈족승계 중 선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대간 승계였고, 그 중 다시 63.6%에 이르는 14개 재벌이 장자승계를 하였다. 한편 13.6%인 3개 재벌이 장남이 아닌 자식의 기업승계유형을 보여줬고, 효성과 대한전선의 경우 계열사를 자식들이 분리승계하였다. 위와 같은 승계는 대부분 그룹의 역사로 보면 2세승

계인데 두산그룹이 유일하게 3세승계를 하였으며 LG가 3세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1.4%는 창업주가 명예회장 등의 직책으로 2선후퇴하는 방식의 사전승계였으며 나머지는 사망과 동시에 승계가 완료되었다. 55%는 승계자들이 이사 이상의 중역으로 입사하였으며 나머지 45%는 부장 이하의 직책으로 입사하였다. 승계자가 입사 후 경영권을 인수할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15.1년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계자의 직계가족으로 형제, 삼촌을 선정하여 중역 이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분의2인 14개 재벌에서 직계가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었으며 평균 참여자 수는 2.3명이었다. 조사대상 그룹 중 약 10%에 해당하는 재벌이 승계과정에서 분쟁을 경험했다.

재벌의 승계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행위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승계과정에 탈법과 불법의 요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미땅히 정부가 개입할 책임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의 3세승계과정은 재벌승계가 갖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에스원 같은 비상장 우량계열사의 지분을 사도록 한 다음 상장을 통해 수십배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순식간에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중앙개발과 같이 삼성의 부동산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산가치 수조원대의 회사를 정부가 100억원 정도에 경영권을 넘겨주며, 상장회사인 삼성전자로 하여금 부당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주는 등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96년 이래 경영권이 승계된 기업들의 부도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추어 훨씬 높았다는 것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로의 재벌승계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위험

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지분만을 가진 지배주주가 이렇듯 국민경제 전체를 불모로 잡고 있는 사태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상속, 증여세제를 보완하고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문제는 재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요즈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이다.

6. 결론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워크」는 「개혁을 망설이는 한국주식회사」라는 1. 19.자 기사에서 전문가의 입을 빌려 국내 4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구했다.¹⁸⁾ 기사내용을 보면 “한국의 재벌들은 장래성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삼성은 조선, 중공업, 항공, 석유화학을 포기하고, 현대는 항공, 석유화학, 반도체를 버려야 한다” “외국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대우, 삼성, LG 등 4대 그룹이 개혁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삼성은 자동차사업을 포기한다고 말해야 한다”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대의 제철소 건설 백

지화 역시 마찬가지다. 「비즈니스워크」지는 또한 재벌총수들이 지배력을 잊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바짝 엎드려 그려저리 지내다 경제 위기가 진정되면 예전의 방식대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위 잡지는 이어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경제개혁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위 잡지는 또한 비대위가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김용환 비대위 위원장을 꼽았다. 김용환 위원장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명령, 통제의 경제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 잡지는 또한 재벌은 현재 고금리와 현금고갈로 어쩔 수 없이 개혁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만 강력한 압력을 계속 가해야만 ‘재벌왕국’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연 우리는 재벌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최대한의 재벌 개혁을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17) 조동성,『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18) 『매일경제신문』 98. 1. 14.자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으면만...

- 새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운명과 반대운동의 과제

김기중

1. 들어가며

대통령당선자가 TV토론에서 “전자주민카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 훨씬 좋지 않고, 지금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무척 불안하다. 이렇게 넋놓고 있다 지난 97년 정기국회 때 갑자기 근거법률이 통과되는 날벼락을 맞았듯이 이번에도 날벼락을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자 한다.

2.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경과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세상에 공개한 것은

1995년 4월이었다. 정부는 이미 이 제도를 1988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음에도 비교적 완비된 형태를 갖추어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공개하였다. 사회에 비판적 시각을 갖춘 많은 사람들조차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뒤늦은 1996. 10. 경에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¹⁾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그 반응은 미미하였다.

공대위는 1997년 4월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라는 50여쪽의 조그만 홍보책자를 1만부 인쇄하여 배포하면서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소책자는 단어 자체부터 어려운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공대위는 1997년 4월부터 6월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워크샵, 변협토론회, 제주공대위 토론회, 전주공대위 토론회, 2회의 자체 토론회 등을 치루어내었다. 1997년 6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

었고, 이에 대응하여 국회 앞 시위, 참가단체 대표자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한 국회압박활동을 하였다. 국민회의의 내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도움과 이 제도에 찬성하는 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대선후보 경선 때문에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 힘입어, 법안은 상정만 된 채 의결되지 않았다.

이후 이 제도를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고,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전자주민카드문제는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도 전자주민카드제도의 근거법률이 입법되지 않고 무난히 넘어가는 듯하였다.²⁾ 그런데 1997년 11월 13일 오전 국회 내무위원장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격 제시하였고, 이 수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되었는데, 국민회의의 담당의원 대신 다른 의원이 소위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반대주장을 하지 못하고 통과되었고, 오후에 개최된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민회의 의원들만 반대하는 속에 표결 통과되었다. 이후 공대위, 그리고 소속된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시위, 신한국당 항의방문 등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기는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제 관건은 대선후보들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확인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반대운동을 하는 것 이었다. 다행히 제3차 TV합동토론회에서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질문이 채택되었고, 현 당선자는 이 제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TV토론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와 국민회의와 당선자의 입장이 무엇인

지 알게 되었다.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에 새로운 희망이 보였다. 더불어 IMF의 요구로 인하여 재정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상황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3. 현재의 상황

새로운 상황은 두 가지이다. 집권세력의 변경과 경제위기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전자주민카드제도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공표한 이상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지출삭감원칙도 이 제도를 최초시킬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결코 ‘꺼진 불’이 아니다. 국지적이나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다. 그 존폐가 운용되고 있는 내무부는 이 제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내무부의 배후에는 전자주민카드제도로 생활을 노리는 국내 굴지의 반도체 생산 기업체가 있다. 삼성, 현대, LG는 모두 이 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전자주민카드에 사용될 IC칩 제조시설을 이미 갖추어놓고 있다. 초기에 3,400만개의 IC칩 시장이 형성되고, 이후 매년 300 내지 400만개의 수요가 발생하는 시장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 사실 바보같은 일일 것이다. 또 다른 배후의 의심도 있다. 이른바 ‘공안세력’들이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전자주민카드추진기획단에 초기부터 참여하였고, 확인되지는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으나 이 제도의 실질적인 주체는 안기부라는 견해도 있다. 즉, 이

2) 1997년 정기국회는 이 제도의 시행 여부를 갈음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정부는 1998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여 일부 시설 투자까지 하고 있었으나 공대위측에서 근거법률 없는 예산 사용을 집중적으로 비난하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추가사용을 멈추고 법안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다. 만약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998년도 예산이 전면 삭감되고 사업은 1999년 이후로 대폭 늦추어지기 때문에 업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 사실상 제도는 좌초하게 될 상황이었다. 공대위는 제도가 좌초될 것이라고 설불리 낙관하고 있었다.

1) 1997년 12월, 애초에 수록하기로 하였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사항, 병역사항, 지문, 인감증명(선택)만을 수록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후부터 ‘통합’이라는 딱지를 폐기로 하였다.

제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력의 힘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더구나 제도의 시행을 못박고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1998년 12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제도의 추진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법률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만 하는데, 국민회의 자민련은 국회에서 소수당에 불과하다. 한편 대통령을 비롯하여 새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들 중 대부분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전문행정관료들의 치밀한 논리에 설득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새로운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내무부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재정감축과 인력 절감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회의 공약사항인 읍면동의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IC카드업계의 발전에 계기를 주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관계 전문가의 눈에는 그 맹점이 쉽게 보이는 위와 같은 주장도 일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스며들 수 있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4. 반대운동의 과제

앞에서 본 것처럼 전자주민카드 문제는 현재 잠복

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제도에 확실한 사망선고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즉,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대립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새 정부의 집권초기 정책 결정이 주로 대통령적인수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인수위(담당 : 정무분과)³⁾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로비' 형태의 압박을 가하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1. 20.경 인수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쓸 때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적어도 인수위의 보고서에는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반대하는 취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문제는 당선자측에서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하기는 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내무부의 개편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대강의 흐름을 정하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제와 전자주민카드제도 사이의 관련성은 새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대위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일단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설득작업에 실패하더라도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이므로 장기적

인 전망을 갖고 토론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사실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의 수요가 없어지거나 읍면동사무소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와 전자주민카드를 연결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간부분에서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지 않는 한, 75%에 이르는 민간부분의 등초본 수요를 잠재울 수 없고,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등초본 발급인력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등초본의 발급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사무소의 증명관련사무는 전체 사무의 20%에 불과하고, 증명의 직접 발급에 관계된 사무는 전체 증명관련사무중 30%에 불과하기 때문에⁴⁾ 등초본의 발급수요 감소에 따른 인력감축효과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부 등은 그 효과를 부풀리고 과장하여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위와 같은 반증을 정책결정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과장된 효과가 그대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결정과정의 현실이다.

인수위와 정개위가 이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새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법률이 존재하는 이상 최종적인 문제해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제도의 시행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관련 업계의 로비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석방운동 없이 양심수 석방 없다'라는 어느 단체의 성명서 제목처럼, 이 제도의 반대운동도 비록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반대운동을 치루어 낸 후에야 최종적인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에서 지적한 여러 우려할 만한 요인들 때문에 새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제도의 시행 가능성이 오히려 다른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보다 훨씬 커지고, 반면 반대운동의 어려움은 그에 비례하여 또는 그 이상으로 어려워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 경우 이 제도를 좌초시킬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적인 반대운동뿐일 것이고, 공대위의 구성원들은 그동안 활동해오면서 몸으로 느낀 종교계 등을 포함한 각계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비추어 전국민적인 반대운동이 종국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과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의 막대한 손실을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이 문제가 종료되기를 마음 깊이 희망하고 있다.

3) 정무분과위에는 국민회의측의 김정길 부총재, 조찬형 의원, 김덕규 전의원, 추미애 의원이, 자민련측의 이건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계속 문제제기를 한 추미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고무적이다. 정무분과는 내무부 외에 대통령 비서실, 총리실, 법무부, 총무처, 정무1·2장관실, 법제처, 비상기획위원회, 감사원을 담당한다.

4) 한국전산원, 「전자주민카드의 사회 및 산업영향분석」, 1996. 12.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박 대 균(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의 경과와 반성

가. 90년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경과

“공을 산 위로 굴려도 굴려도 언제나 다시 제 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수십년 동안의 민족민주운동의 고된 과정였다.”¹⁾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진보운동, 민중운동의 가장 오래된 과정이자 가장 고된 주제가 되는 운동이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었다. 그러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남북합의서 채택 시기까지)의 호황기를 거쳐 현재는 매우 침체된 상황이다.

90년대 들어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대체로 세 갈래로 진행되어왔다.²⁾

먼저 상설적인 연대기구운동이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가 92년 4월에 결성되어 꽤 활발한 활동을 하였지만, 92년 대선 직전에 터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공동대표였던 김낙중씨가 구속되는 등의 탄압 끝에 해소조차 하지 못하고

마을 내렸다. 이후에도 ‘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모임’(94년)이나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행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9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존속) 등의 상설적인 연대기구가 출범하여 활동하였지만, 뚜렷한 운동의 전전을 이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도 초기에만 반짝였다가 지지부진했다. 더욱이 조직의 탄압 이후 만들어졌던 많은 수의 공대위는 거의 그 결과가 미미하였다. 상설적인 연대기구나 한시적인 공대위나 모두 그 활동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가협의 활동과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민가협은 탑골공원 앞에서 매주 벌이는 목요집회를 2백회가 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과 매년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콘서트를 벌이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일감독체험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민가협은 구태의연한 집회 방식의 운동에서 문화적인 이벤트 기법을 도입한 운동방식을 도입하여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런 참신한 운동방식의 도입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 양심수라는 주제의 성격상 일반시

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많은 문제점이 장기수, 양심수 문제의 그늘에 가리워져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벌인 조작간첩대책사업은 피해사례 중 뚜렷한 집중점을 잡아 상당 기간 열정을 쏟아 전개되었다. 그러나, 신귀영씨의 재심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면서 이 활동도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95년 11월에 열린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로>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에서 열린 최대의 국제인권회의였고, 국가보안법의 국제전략을 모색한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후속사업의 부진과 핵심 실천단위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그 성과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97년 초 열린 <안기부법 국제심포지엄>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로는 민변 변호사들의 소송활동이다. 민변 변호사들의 소송활동은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낸 부분이다. 안기부나 수사기관의 불법성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그를 시정토록 하였고, 부분적으로 하급심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도 끌어냈다. 이런 활동들은 작지만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런 활동도 보수적인 사법기관의 근본적인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제기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또한, 유엔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소송으로도 발전시켜내지 못하였다.

그외에도 전국연합, 범민련 등의 주도로 90년 이후 매년 8월 통일운동 행사 개최와 이 과정에서 8월 초부터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통일선봉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국회 개원을 즈음한 국가보안법 개폐 청원 및 국회 앞 시위 형태의 입법부 압력 투쟁, 문학·예술·영상물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탄압에 맞선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 대

책위’ 형태의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활동, 책자 및 자료집 발간 등의 홍보사업 등을 전개했다. 이와 더불어 유엔 비엔나인권회의와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와 국제앰네스티 등의 국제인권단체에 지속적으로 상황 전달 및 항의운동 조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한계

물론 이 운동이 전혀 성과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도달하고 있는 지점은 매우 암울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그간의 운동의 한계를 짚어보아야 한다. 현상적인 모습만 보아도 그간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짚을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양심수는 93년을 제외하고는 대폭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96년과 97년의 양심수의 수는 노태우 정권 시절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들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수도 계속 늘었다.³⁾

둘째, 공안세력은 약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공안세력 중에 확실히 안기부의 직접적인 역할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93년말의 안기부법의 개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아래서 검찰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세력들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도리어 검찰 공안부는 96년의 한총련 연

1) 95년 7월, 81.5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철폐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야기」

2) 별첨된 자료, 서준석, 1996. 12. 학단협 주관의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토론회 발제문 참조

세대 사태를 지휘하면서 공안세력의 중심부를 장악 했으며, 곧 이어 발족한 한총련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와 97년 4월 확대개편된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를 주도하였다. 이런 검찰 공안부는 과거의 공안세력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수동성을 벗어나 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독자적인 기획과 추진에 의해 공안사건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검찰 공안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 구축에 성공한 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남용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의 대상은 단지 한총련만이 아니었다. 97년 하반기에 사회과학 서점 대표들을 구속하고, 광주대 박지동 교수를 구속하였으며, 이장희 교수에 대해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하였고,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문제삼아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서준식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교과서와 국방부 정훈교재마저 이적성이 있다는 시비를 걸고, 학위논문조차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할 정도다.

셋째, 제도정치세력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대체입법하자는 의견조차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건드려서는 안될 성역으로 굳어지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기존의 당론이었던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DJP 연합 추진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7조(찬양·고무 등) 10조(불고지)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겠다는 입장마저 철회되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일부 개별적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물론 대체입법이 가진 문제점은 여전히 남지만, 대체입법, 개정조차 입밖에 넣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전선의 협소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80년대말의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존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특히 대학생층조차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전개하면 할 수록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을 목도하기에 이르렀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80년대말, 90년대 초 박원순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연구」 등 많은 연구 저서들이 발표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렇다 할 연구 결과도 전무한 형편이다. 매년 몇 차례씩은 토론회와 심포지엄이 열리지만, 현상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실태에 대한 분석만 있었지 새로운 논리는 전혀 나오지 못했다. 여전히 통일운동적인 논리에 의존한 국가보안법 폐지논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통일운동의 침체와 함께 더 이상 일반적인 설득력을 지니기 힘든 상황이다.

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평가

80년대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연구 3」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평범한 연대와 구심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전략이 민족민주운동세력 내부에서도 통일되지 못했다. 셋째,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과학적 전문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대열에 일반 국민을 끌어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끌어들일 만한 구체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90년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대해 위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

다.⁴⁾ 이에 더해 서준식씨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고, 광적인 탄압국면에 대응하는 이미에서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대중적 지지보다도 오히려 고립을 초래한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술의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과 개정 주장은 세력 간의 협력과 공동투쟁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결국 기존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초조한 활동가들만의 운동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량 있는 연구자와 전문지식인들을 폐지운동의 전략 생산단위로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계획했고, 광범위한 시민·대중과 함께 하려는 고민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80년대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계를 90년대에 들어와서도 답습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불행하게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지속해왔다는 얘기와도 통한다.

2.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방향 전환을 위한 문제의식

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정권을 편 측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안전제일주의 사고’를 부채질하고, 이를 자신들의 반현법적 정권운용에 이용하였다. 가장 강력한 정권도전세력들은 공산주의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처형 내지 투옥되었다. 그때마다 사용된 법이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이다. 이렇듯 상당한 부분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안전제일주의’ 사고에 심리적 보상을 주면서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황되고 병적인 ‘안전심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독재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정권의 안보를 위한 이데올로기 수호 수단, 정치적 반대 억압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며, 그 법률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국가의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모든 국가 성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안전심리’란 바로 지금껏 정권측에서 주입해온 반공이데올로기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안보논리의 상징으로서 이와 같은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힘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어 있다. 일반 국민에게 해방 후 지금껏 끊임없이 세뇌해온 안보논리와 반공이데올로기는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에 대한 평범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발목을 거머잡고 있다.”

이런 논리들에 의해 우리 국민들은 ‘적색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으며, 냉전이 세계적 차원에서 해체된 지금까지도 국민들을 위협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기 위해 공안세력들과 극우단체들이 벌이는 활동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란 입지의 축소에 불안해하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 세력들에게는 돈도 있으며, 힘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자들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그래도 양심적인 인사라고 해도 국가보안법과 정

4) 서준식, 위의 글 참조

5) 강경선,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민주주의의 실현」, 「국가보안법 대토론회 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 1991. 5. 3. 6쪽

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것은 지식인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 발생 50주년이 다 되어가는 제주도 4·3학살의 피해자가 아직껏 입을 열지 못하는 것도 이런 공포기제가 유효하게 먹혀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실체가 있는 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적색공포증을 제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껏 해왔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이런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법의 문제만을 붙잡고 늘어진 탓에 결국 일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력이 약화되는 듯하다가도 상황이 반전되면 여지없이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시지프스의 바위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 국가보안법 논리가 강고하게 벽을 치고 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유치한 양심수 논쟁이 불었다는 점을 보면 이는 즉각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화나 문화예술, 방송 등의 언론에 대한 검열도 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음란한 성행위니 하는 것들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 논리가 아주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다. 이런 논리들이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 내면화되어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존재하면서 우리의 의식과 표현,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 적'을 목표로 제정되고 발전되어 왔던 국가보안법 논리는 끊임없이 내부 적을 재생산해내면서, 그 내부 적을 격퇴하기 위한 논리와 개발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고, 거기에 일반 국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구호성 집회를 아무리 갖는다 한들,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국민의 절반이 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는 무망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기본방향

우리는 지금껏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기를 주장해왔을 뿐이다(물론 국가보안법의 다양한 해석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뿐만 아니라 일반행정권과 사법권, 경찰과 군대, 그리고 비공식적인 권력까지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실제 투쟁은 시민불복종운동이나 저항권의 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철폐는 불가능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은 총력 대응하는 데 비해 철폐운동을 하는 운동진영은 일시적인 대응, 즉 자적인 대응, 이벤트성 대응 등 단발성 대응만을 해온 것이니 어쩌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도래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해왔던 민가협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이나 헌신적인 몇몇 인사들의 활동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가려 빛이 나지 않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한 운동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80년대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원순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가져야 할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이끌어나갈 만한 주체가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국가보안법 남용을 주도하고 있는 정권당국과 공권력을 향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일반 국민을 향하여 시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이같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대중화를 이루고 폐지의 당위성에 관하여 설득해내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를 계속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대중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논리로 재무장되어야 한다. 위 필자의 지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지속되어왔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논리가 다음과 같은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목표일 것이다.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의 사상과 신념으로 인해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⁶⁾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접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가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는 국경을 넘는 여부에 관계 없이 구두, 서면이나 인쇄물, 예술품의 형식 또는 자기가 선택한 기타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수리하고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⁷⁾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제인권규준에서도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관심은 실재에 있어 또는 이른바 평화적 정치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동안 과거의 모든 정권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정적, 특히 적의 성향의 견해를 억압하는 평계로 사용되어왔다. 예술가 및 작가, 출판업자와 언론인들이 활동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통해 적용되었다."⁸⁾

이런 인권적인 논리로의 대체가 국가보안법 철폐의 토양을 만들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무참히 주저앉은 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인권적인 관점의 철저한 관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계적인 범주에서 권위를 지니는 인권의 보편적인 인식과 주장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뒤집어씌워지기 마련인 이데올로기 공세에서 자유롭게 그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인권"은 정치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소리 높이 외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입지를 보장해준다. 또한 '인권' 운동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UN이라는 장에서 쉽게 먹혀든다는 이점이 있으며 일반시민·대중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으므로 특히 '냉전 이후' 시대에 있어서 운동의 대중성을 달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과 국보철운동은 이제 막연히 혼재되어서는 안되며, 국보철운동은 자체의 독립된 전문성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⁹⁾

3.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새로운 방향

가. 현시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규정하는 조건들

올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울러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해에 맞춰 다양한 인권논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세기

6) 블테르

7)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8) 97. 11. 국제앰네스티, 대선후보에게 보낸 공개서한

9) 서준식, 위의 글

가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로 한발 나아가기 위한 대안 모색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96년말의 시점에서 서준식씨는 “요컨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장에서의 약간의 회망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호의적인 조건은 아무 데도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인 장에서의 국보철운동이 잘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 규모의 성공적인 국보철운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갑갑하게 만들고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5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는 올해 초의 상황도 위에서 정리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중요한 계기들이 있다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1) 세계적으로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미국의 패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에서도 보이듯 세계적인 범위에서 금융자본의 착취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의 세계화, 실업문제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의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개발독재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은 희망적인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인권흐름은 최근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 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96년 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지역에서도 꾸준한 논의 끝에 98~99년에 국가보안법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점은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다.

(2) 국내의 상황은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 정권이 사법제도의 개혁과 안기부의 위상 축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지를 다짐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철폐되기는 힘들어도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례는 현저하게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고, 김영삼 정부 아래서 독자성을 확보한 공안세력의 존재가 엄연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호조건이 만들어지리라는 낙관론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경제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정리해고제등의 도입으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 물가의 폭등, 세금의 증가 등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어떤 민주적 요구도 이 경제논리를 넘지 못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국가보안법 사업을 전개하는 데 중대한 난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가운데서 기존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오히려 공안세력이 다시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공안세력을 도와주는 풀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자체마저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상황이 있었던 만큼 공안세력은 호시탐탐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운동주체들은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3) 과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그나마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기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었던 때였다. “국가보안법의 무지막지한 남용이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일반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소극적 내지 냉소적이 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거대 언론매체들의 대대적인 ‘피해자 매도’가 국민의 의식 속에 깊이 박힌 반공정서를 부채질한 결과다.” 새 정권에서 남북관계는

여러 모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새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고, 4자회담이 예비되어 있으며,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서,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테면 흡수통일과 같은 형태의 통일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국내의 상황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극복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목표

기존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논리는 악법성의 폭로, 반통일성의 폭로, 공안세력의 남용 규탄이었다. 즉, 직접적인 국가보안법과의 전면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해야 할 때’이다. 즉,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국가보안법의 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방향은 계속하면 할수록 국가보안법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생존했던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명줄을 끊는 운동이어야 한다. 안보논리를 파괴하지 않고는 국가보안법의 철폐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안보논리를 깨는 것만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운동이 고강도투쟁이었다면, 저강도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의 조건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조건 위에서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끌어내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결국 이 운동의 국내 목표는 단계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무력화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보안법의 사문화(死文化)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98~99년의 캠페인의 목표는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내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가령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국보법의 폐지에 찬성하는 정도까지) 판단내리기 전까지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뒷전으로 돌려져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주요 인권 의제와 관심사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냉전체제 하에서 탄생한 국보법의 인권침해의 성격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국보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각종 국제인권회의등에서 권고가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다. 아울러 해외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의 현실을 평범하게 알리고,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일이 제대로만 진전이 된다면 국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국가안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세계가 준수하도록 약속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현실에 비추어 설명하고, 인권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 악법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일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로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인 바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은 절로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 2천년대를 맞아 과거의 냉전유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으로 털바꿈하자고

할 때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인 인권교육은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는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증진하는 개념”이란 정도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면 운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먼저 운동의 주체를 확실히 확보하는 데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만을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략단위를 구성하는 일은 이 운동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껏 이 전략 단위의 부재로부터 모든 문제는 파생되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운동은 아마 ‘의사표현의 자유 확보운동’ 정도로 불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권의 언어로 해석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급심에서 무죄석방이 나오고, 상당수의 국보법 구속자들이 집행유예로 나오며, 그전처럼 간첩사건이 파괴력을 갖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보안법의 논리가 파열되고 있는 상황이 목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넘고 넘어야 할 산이 즐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목청껏 구호를 외치는 것기보다 냉철하게 입장을 정리한 위에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이 일에 뛰어들 사람을 조직하는 일이

다. 사실상 국가보안법과의 싸움은 법과 제도, 의식, 관행, 공권력, 행정기관, 비공식적인 권력과의 투쟁이며, 따라서 지배구조를 파탄내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철폐라는 목표를 설정하자 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순차적으로 꾸준히 나아가자는 것이며, 더 이상 운동권의 고립적인 운동을 탈피하자는 것이고, 국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연대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안보논리로 세뇌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인권의 논리를 확고히 뿌리내리게 할 때서야 그 운명을 다한다는 것을 몇 번이라도 강조하고 싶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김종서 교수의 다음의 말을 빌어 이 글을 마친다.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국제 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불을 지펴야 한다.”

새로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향하여-기본구상¹⁰⁾

서준식

① 국가보안법문제에는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가지고 ‘인권’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인권’은 정치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소리높이 외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입지를 보장해준다. 또한 ‘인권’ 운동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UN이라는 장에서 쉽게 먹혀든다는 이점이 있으며 일반시민·대중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으므로 특히 ‘냉전 이후’ 시대에 있어서 운동의 대중성을 달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이제 막연히 혼재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자체의 독립된 전문성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② 철폐를 주장하는 진영 뿐만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까지를 전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단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 단위는 가시화되어도 좋지만 반드시 가시화될 필요는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두뇌’ 이자 분산된 운동에 질서를 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이 단위는 초일류급의 이론 및 아이디어를 갖춘 학자, 변호사, 정치인, 외국인, 운동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고 폐지운동에도 개정운동에도, 그리고 각계에도 믿음과 영향을 주는 인사가 바람직하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융성기는 물론 침체기에도 정례적으로 만나야 한다.

③ 위 ②와는 별도로 역량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입법에 관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집 발간, 그것의 영역과 국제적 보급, 수준 높은 토론회 조직 등을 목표로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 스터디 그룹에도 결합하면서 부단히 연구와 철폐운동의 실천을 연결시키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

④ 위 ②와는 별도로 국제감각이 있는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로 구성되는 국가보안법의 국제적 로비 활동을 위한 국제로비단을 만들어 UN과 외국인권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로비를 진행시켜야 한다. 그것이 무리라면 유능한 재외동포 몇 사람을 로비스트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국제활동을 위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전략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 로비단에도 결합하면서 부단히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있어서의 ‘국내’와 ‘국제’를 연결시키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 외국(미국이 바람직하다)에 재외동포가 책임을 맡는 상설 로비사무소를 두는 일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해외교포단체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있어서 연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 위 ②와는 별도로 몇 사람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상설적 국가보안법 소송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피해사례를 널리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헌법소원, 재심, 손해배상청구소송, 고소·고발 등 업무를 체계

9) 서준식, 1996. 12. 학단협 주관의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토론회 발제문 중에서

적·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일부가 이 소송추진단에도 결합하면서 이 법률투쟁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전체상과 가능한 조화시키기 위한 파이프 역할을 한다. 이 단위는 위 ④와의 협력 아래 국제송무도 추진해야 한다.

⑥ 국가보안법 철폐만을 자신의 유일·궁극의 사명으로 삼는 단체가 생겨야 한다. 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는 한편 꾸준히 자료를 정리하고 각종 홍보(인터넷에 계속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일 등)를 하면서 항상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헛볼을 끼지 말아야 한다. 위 ②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기구 결성준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공동대응기구가 결성될 경우 이 당위가 그대로 사무국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운동가로서 유능한 30대 후반~40대가 책임을 지고 상근·지도해야 한다.

⑦ 상설적 대응기구의 결성은 비현실적·비효율적이이며 시의에 맞지도 않다. 그러나 공동대응기구의 필요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 ⑤가 결성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공동대응기구는 반드시 여러 단체와 개인의 굳은 결의 아래 한시적 활동을 전제로 해서 결성되어야 한다.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항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실제로 상당한 힘을 실을 수 있고 선출되는 집행위원장이 상근할 수 있는 기간(약 2~3개월)을 이 공동대응기구의 활동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

⑧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해서는 묘안이 없다. 운동이 가시화·구체화될 날을 위

하여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많은 재단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기금을 낼 수 있는 희한한 재단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⑨ 그밖에, 전통적인 철폐투쟁에는 변화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없었다. 카페라이터, 인터넷 전문가, 국내 정치권에 로비할 전문가, 대중적이고 계몽적인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작가, 만화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등을 장기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확보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촉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①의 입장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②와 ⑥이 우선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조비리 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토론자: 차병직(사회), 김창국(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원표(동아일보 기자), 한인섭(서울대 교수), 심병호(사법 제자리놓기모임 회장), 손광운(민변), 방희선(판사), 김형철(연대 교수), 유중원(민변), 정종섭(건대 교수), 김칠준(민변), (이상 발언순)

편집자 주: 민변은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연구소와 공동으로 법조비리 척결과 사법정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97년 12월 11일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종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 <법조비리 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글은 이 날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차병직: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는 알게 모르게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법이 삶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에서 시민들의 법률을 대신하여 담당해주는 전문가가 변호사인데, 오늘 날에 와서는 법률가 하면 흔히 돈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게 되고, 돈에 대한 집착은 법률가의 내력처럼 되어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선 현재 법조계의 전체적인 비리, 특히 사건 수임을 둘러싼 브로커의 문제들을 그 실태부터 시작해서 대책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로 이야기해볼까 한다.

김창국: 지금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여전히 모든 뉴스의 첫 머리는 경제문제다. 그 와중

에서도 법조비리문제가 심심찮게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법조비리문제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법조계 전반의 전에 없던 자정노력을 언론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조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법조비리의 뿌리를 더듬어가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고리와 깊은 연관이 있고, 거기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문민정부 초기에 우리 국민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9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유도 부패 척결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기대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비록 자의가 아닐지언정 자기자식을 구속하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의 성역 없는 사정은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윤리법의 제정등은 팔목할 만한 개혁조치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의 반부패개혁정책은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간

략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정부의 반부패개혁의 실패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지만, 무엇보다도 개혁주도세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질적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바른 처방이 나온다. 수술일자를 정하는데도 환자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따져서 정한다. 그런데 그 고질적인, 그래서 문화로까지 정착한 우리의 부폐문제를 해결하는데 김대통령은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다. 결국 마스터플랜 없이 시작된 개혁은 실패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현재 법조 3류의 정화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내용은 다소 불충분하고 자칫 일과성 정화운동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조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근절하는 운동과 병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가 없는 일과성운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법조비리의 정화를 위한 개혁작업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차명직: 우선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과 실태들을 살펴보겠다. 그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동아일보」 조원표 기자가 먼저 말씀하시겠다.

조원표: 우리 기자들이 이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물론 의정부의 이순호 변호사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접하며, '과연 이순호 변호사 혼자만의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집중취재를 하게 되었다.

우리가 취재한 부분 중의 하나는 변호사의 수임방식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부분은 변호사계와 판사,

검찰의 유착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취재의 초점이었다. 우리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수임방법에서는 공개적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학연, 지연에 의해서 수임이 된다는 것과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관예우와 밀착되어 있다.

이순호 변호사의 경우를 봐도 이미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이순호 변호사에게 가면 모두 해결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을 만나보면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와중에 '이순호 변호사에게 가면 모두 석방될 수 있다'는 형사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하물며 내가 아는 어떤 피의자는 친척이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가 시킨 대로 (이순호 변호사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브로커들이 활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전관예우라는 기본적인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전할 때 이렇게 한다. '당신이 구속되면 몇 단독에게 간다. 이순호 변호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 그 판사와 같은 방을 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친척이 현직 검사라도 아무 소용 없다. 그냥 (이순호 변호사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또 형사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형사가 서랍에서 꺼내주는 명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수임이 제일 많았다.

한 예로 올 7월에 MBC <카메라출동>에 보도된 도박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17명이 적발되고 전부 영장이 청구되었다. 그 중 이순호 변호사가 9명을 맡았는데, 이순호 변호사가 맡은 9명은 전부 영장 기각, 적부심 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났다. 풀려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범이 아니었다. 주범은 이순호 변호사가 맡은 사람들이었다. 주범도 이순호 변호사에게 가면 풀려난다. 또 이런 게 하나의 명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 사회에서는 '이순호 변호사에게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하나는 학연과 지연으로 수임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취재협조를 구하려 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얼마 전 갑자기 창원에 있는 검찰직원이라며 전화가 했더란다. '변호사님이 저희 사건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알아봤더니 변호사님이 사건의 판사와 가장 가까운 친구더라. 변호사님이 맡으면 빨리 석방될 것 같다'고 하더란다. 그 변호사는 결국은 거절을 했는데, 이런 식의 수임방식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관예우가 가장 기본적인 원죄다. 그리고 그에 따른 브로커의 활개, 그것을 이용한 일부 변호사들의 돈에 대한 욕심이 오늘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또 하나는 법조계 전반의 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취재중에 만난 어느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술을 얻어먹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다' 하는 도덕 불감증이 있다. '술은 몇백만원 어치 먹어도 괜찮고, 돈은 받으면 안된다'라는 의식이 많이 있는 것이다.

아직도 지방에는 이른바 '실비'라는 것이 있다. '실비'는 5.16 때 판사와 변호사가 만날 기회를 봉쇄하니까 변호사가 대접할 것은 없고 하니까 생긴 거라고 알고 있는데, 판사들은 그걸로 밥을 먹고 용돈을 쓰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감증이 있다. 그렇게 실비를 주고 받고 하는 걸 직원들이 보고, 또 그들이 브로커 역할을 겸직하게 되는 거다. 전관예우, 변호사, 판사의 유착은 결국 전문 브로커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의 직원들도 '어느 변호사는 어느 판사와 친하다'는 식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거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끼리 리스

트를 둘리기도 한다.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올 10월말까지의 형사사건 전국 수임건수를 봤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올해 1위를 한 분이 판사 출신인데 192건이었다. 월평균 19건이다. 더 심한 경우는 대구의 모변호사는 97년 2월말에 개업을 한 변호사인데, 10월말까지 8개월 동안 349건을 했다. 월평균 43.9건을 한 거다. 이런 경우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충분한 변론이 가능하겠나?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전관예우라는 것 때문에 브로커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 거다. 내가 알고 있거로는 전국의 개업변호사가 3,300여명쯤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수임하는 형사사건의 수가 1만여건이라고 들었다. 그러면 평균 3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 차가 있다 하더라도 3건과 300건의 차는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취재중에 경험한 것 중 기사로 쓰지 못한 것 하나만 말해보겠다. 어느 호텔의 술집에 취재차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변호사가 대놓고 먹는 술집이라고 했다. 거기는 판사들이 가면 그냥 먹는 곳이라고 하더라. 거기에서 내가 법조담당하는 마담을 찾았더니 1분도 안돼서 왔다. 그래서 내가 '나하고 한번 거래를 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 마담이 '물론이죠, 여기는 항상 판사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형사사건을 둘러싼 변호사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화노력이 없다면, 또 일과성의 구호로 끝나버린다면 영원히 더 이상 진전 없이 부패는 계속가지 않을까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든다.

한인섭: 개인적으로 이순호 변호사를 학교 다닐 때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사람들이 처음에 법과대학에 들어왔을 때, '나는

전관예우 받아가면서 한 달에 얼마를 벌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데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전관예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2년이고, 적어도 2년 동안 눈 떡감고 하면, 건당 5백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고, 또 이런 사건이 문자 그대로 안될 사건이 아니라,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는 경계사건이 이런 변호사들을 찾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에 대해 법률적 도움도 좀 주면서 때론 석방도 시키면서 돈도 받아 챙기기도 하는데, 그런 선상에 변호사를 세워놓고 물어본다면 선뜻 거절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번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 이후 내 주변에서 이 변호사를 평가하는 2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그 친구 사람은 좋은데, 해도 너무했어' 하는 것과 '특별히 문제가 된 사건을 잘못 맡다보니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이 좋다는 것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치되는 사회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배척당할 가능성이 많다. 위아래 두루 원만하게 지내며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상부 상조형 부패에 적합한 인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수없다'는 말에는 그렇게 많이 해서 걸린 사람이 서울의 상위 10위 내에도 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사건이 '적당히 해먹는 건 관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라'라는 교훈을 남기는 정도로 끝나서는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할 길이 없을 것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관행적인 것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반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지탄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심병호: 오늘의 문제가 결코 변호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에 호소해오는 사례 중에는 물론 검사나 판사의 잘못을 호소해오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의외로 변호사와의 문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과다수임료나 브로커의 고용등은 천민자본주의가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할 일일 수도 있는데, 이를 테면 변호사가 양쪽으로 수임을 한다거나,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사무장끼리 싸운다거나 하는 요지경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변호사들 중에는 훌륭하고 고마운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소수라는 데 문제가 있다.

손광운: 법조브로커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에 11월 26일자로 43명의 변호사가 동참을 했다. 취지는 이번 문제가 대한변협의 자정도 중요하고, 변호사들의 자체 반성도 중요하지만 위낙 고질적이고, 자정의 범주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찰의 수사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이 1차로 문제를 삼는 건 이른바 '싹쓸이 형사브로커변호사'였다. 전국에서 몇 명씩, 1달에 적게는 10~20건, 많게는 30~40건씩 수임하는 변호사와 브로커를 고용하는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다. 형사들은 단순히 '피의자가 변호사를 1명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소개해준 것이다'라고 변명하지만, 피의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형사의 말 한 마디가 마음의 비수가 되는 것이다. 일례로 서명에 참여한 이아무개 변호사의 친구도 형사의 말 한 마디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너무 고질적이고 당연시되기 때문에 브로커가 활개치고 결국 그 부담은 법률 소비자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일부 몰염치한 극소수 변호사들은 자정

에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변협이 자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난 몇십년간의 고질적 문제이고, 또한 일과성 문제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호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있는 만성적 부패의 결과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결국 우리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기회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터이니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방희선: 이전부터 이런 일들에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악덕변호사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문화의 문제로 보고 싶다. 알게 모르게 어느 시대, 사회, 집단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그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하나의 생활방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문화를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미시적으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대중요법만으로는 또 일과성으로 끝나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최근에 있었던 검사의 도박사건을 보더라도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이상하거나 그 검사가 피이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통상 그렇게 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는 그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 참여해서 담습하며 배운 것이다. 문제는 그 시대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 법조가 그런 문화를 갖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징계를 당하거나 눈총을 받았을 것이다. 생활의 패턴으로 되어 버린, 판사나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한 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고치는 방법은 상황이나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조 내에서

동료의식 내지는 '같이 있던 사람에 대한 배려' 등의 의식은 오래 전부터 소수의 대외적 경쟁을 요하지 않는 폐쇄집단에서 기인하여 친화적 그룹으로 발전하였다기 때문에 이런 폐쇄화된 소수집단을 해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해체하는 방법은 그 집단을 확대하고 개방하는 것이다.

몇 해 전 미국에서 만난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20년 전 미국에도 변호사의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자신들도 상대방 변호사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경쟁을 하다보니 그런 체제는 깨져버렸다고 했다.

의정부사건도 이런 폐쇄구조의 기본적 패턴은 같다. 이전에도 분명히 담습되어온 결과이다. 그런데 이순호 변호사가 문제되었던 것은 기존의 방식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자기 나름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등 변호사 내에서도 기존의 관습을 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큰 문화의 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것은 굳고, 명백히 한계에 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재하는 제도가 작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또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 이를테면 제도적 장치, 변호사의 감독, 징계활동 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개인변호사에 대한 자료 축적이나 내사가 활성화되어 있고, 내 기억으로는 한 해에 1천명 가까운 변호사가 징계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과 법원도 이런 현상을 가능케 하는 문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조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선언적으로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을 확대하거나 판사의 면담절차를 공식화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법조인의 양성제도에 있어서도 법률가라는 기

본토대에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관념이 기본이 되어야 공동의 책임노력이 따른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이쪽저쪽을 가르다 보니 변호사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판사나 검사는 사법관련 국가공무원이라는 의식을 끌임없이 잉태하고 있다.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문화의 틀을 다시 잡는 데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거시적 근본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체질을 개선하면서 거기서 중증으로 나타나는 현상, 굽어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대중요법을 병행하면 된다. 잘못된 문화의 토대 때문에, 잘못된 공생구조에서 허용된 한 공간을 맡아서 사는 일반직, 법조 관련직에 있는 직원들도 그 나름의 먹이사슬을 형성하여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개별현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면, 종국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김형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윤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법률윤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환자가 누구를 죽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고, 퇴원하면 그 상대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가 검찰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환자가 퇴원하여 그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냐 하는 문제였다. 또 변호사의 경우도 그 환자가 살인범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과연 무죄변론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었다. 어디까지가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임무나 등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면 변호사의 윤리문제를 가리기가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예로 강간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가 강간으로 인한 특유의 수치심을 계속 공격해서 더 이상 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쓴다든지, 법정에서 구체적 상황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과연 변호사의 윤리에 맞는 것 이냐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놓고 공방을 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한 사건이다.

선진사회 중에서 사법제도가 정의롭지 않은 데는 단 한 곳도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IMF의 빚을 꾸고, 경제가 파탄에 이른 것도 우리의 직업윤리가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된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제도가 국가의 근간인데, 이것이 병들었다는 건 나머지 모두가 병들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전문가라고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엔 법관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지만 법률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어려운 법조문을 해석하고, 또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 만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지 않는다. 경제학자가 숫자를 읽으면서 숫자 뒤에 있는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해 가슴으로 공감할 줄 모른다면 좋은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본다. 법률가도 마찬가지다. 법조문 뒤에 있는 인간의 기본적 심성, 인간적 관계를 이해하려면 종합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바로 법률교육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을 한 번도 안받고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

이다.

두 번째는 일정한 공인기관에서 제도적 교육을 받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판검사가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정한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오늘의 사태가 오는 데에 구조적으로 기여한 면이 있다고 본다. 언제 한번 법률윤리가 무엇인지 가르쳐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다. 우리나라에 형식적으로 이런 교육기관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다고 본다.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도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이건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사가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사를 안 놓아도 되는데 놓거나 하는 것은 모두 도덕의식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경우, 또는 힘만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마피아라고 부른다. 나는 학교에서 상대(商大) 학생들에게 직업윤리를 가르치면서, '회사와 마피아의 다른 점을 논하라'라는 문제를 낸다. 위에서 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비윤리적이건 반사회적이건 반합법적이건 상관하기 않고 보스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행하는 것이 바로 마피아 집단이다. 거기선 조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는다. 법률가라 함은 이익이 상충되는 곳의 조정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절차적 공정성을 전혀 무시하고 한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이것을 끈끈한 동료애라든지 한 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라든지 하는 단어로 표현하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마피아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에는 법률전문가는 없고 법률마피아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자정능력만으로 안될 때는

사법적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악자가 사회체계에 대해 근원적인 불만을 품고 있는 사회는 안정될 수가 없다. 조금만 위기가 오면 '잘됐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깨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마피아'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병직: 법률서비스는 특성상 무형성이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것이기에 소비자와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최근의 문제로 인해서 법률가와 의뢰인의 신뢰가 점점 깨져가고 있는 것 같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유중원: 오늘은 불가불 법조계 또는 변호사계를 성토하거나 비하하는 자리가 됐는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나 또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변호사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전국에 변호사가 3,400여명 정도되고, 의정부를 포함해서 서울의 개업 변호사가 2,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브로커를 써서 문제가 되는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50명에서 70명 남짓하다. 대다수의 변호사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것이 침소봉대되고 왜곡되는데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50명이 한 일을 가지고 전체 변호사, 전체 법조계가 마치 똑같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왜곡이고 침소봉대다. 이것에 대해 항변하고 싶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석을 구분해주길 당부한다.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1981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300명이었다. 재작년(95년)에 500명으로 늘리고, 작년에 600명 내

년에 다시 700명을 뽑는다고 한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이긴 하지만, 300명을 뽑는 현재 상황에서 전국의 3,400명 변호사 중의 약 반수 또는 서울 개업변호사 중 2/3 정도는 사무실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700명이 나오고 1,000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경제학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균형가격이 형성되는데, 공급은 초과되고 수요가 전혀 창출되지 않는다. 수요는 정부와 기업쪽에서 창출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천명, 2,000명이 나오면 변호사업계 또는 법조계 전체의 대혼란, 이전투구가 예상되는데, 지금 이상의 부조리가, 현재 상황 이상의 브로커가 판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수는 이미 백만명을 넘었다. 백만명이 넘는 미국의 변호사 수임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라.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소송액이 2억5,300만원인 사건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한 경우가 1억이 들었다. 로드니킹 사건의 승소금액이 380만불이었는데, 소송비용은 430만불이 들었다. 그리고 O. J. Simpson 사건의 경우도 형사사건인데 2,000만불이 들었다. 요즘 환율로 300억 원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비교기준 없이 한국은 무조건 과다수임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라. 한국이 과연 과다수임인가. 내가 모은행의 고문을 맡고 있는데 31억 짜리 사건에 360만원을 받고 있다. 너무 근거 없는 사건에 매달려 우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일이 있을 때마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 내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자정노력이 강하고 협회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여러 변호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우선 협회 내부에서 제도적 개선책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강제조사권 또는 강제감찰권을 부여해서 비리변호사를 조사하고 색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번째는 형사사건의 일정 수임전 이상 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 수임 경위를 보고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중이다. 대강 기준이 1달에 10전 이상 수임하는 경우에 수임경위를 보고하고 설명을 요구하도록 강구중인데 이것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또 실효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형사변호인을 협회에서 추천하는 것이다. 형사변호인단에 가입하는 변호사에 한해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번제에 의해서 배당하는 경우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정착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률소비자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나도 여러 차례 경험한 바이지만, 열심히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성과를 충분히 볼 수 있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스스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나 악덕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비용과 사건 결과를 놓고 불평을 한다. 이건 우리의 법률문화의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법률소비자는 피해자라고 치부되어서 전혀 지적이 없는데 법률소비자측의 문제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형사변호인단의 문제도 결국 법률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협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성폐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협회 내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내에 법조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다. 그래서 부조리가 신고되면 윤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신속하게 강제 조사하여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사무장이라는 것이 있다. 브로커들도 거의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사무장이 정식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공급되는 통로가 전혀 없다. 그냥 알음알음으로 어렵게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판에 사무장의 과거를 따질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무장이나 직원의 등록을 거부하고, 변호사에게 그런 사무장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또 하나 제도적 개선책으로 강구되고 있는 것이 기소 전 국선 변호인의 도입이나 법관의 면담절차를 제한하는 문제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법관을 만날 수가 없다. 법정에서 보면 그제서야 인사를 나누는 정도다. 우리나라로 법관의 면담절차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두어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의 면담절차를 강화하여 실속 있게 지켜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에 개업을 제한했던 적이 있는데, 그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최종근무지 혹은 퇴직 전 근무지의 업무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다. 이것이 현법적 문제는 없는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법조브로커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현재 당직변호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책임의 일부는 법률소비자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도움이 있어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사법비리를 근절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창국: 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할 때 하는 주로 하던 일 중의 하나가 회원들이 개업할 때 참석해서 배지 달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이었다. 많은 회원사무실을 가보면 사무실이 너무 크고 화려하다. 현실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나마 전관예우라도 받아서 충당한다지만 아무런 인연 없이 개업한 사람들은 1억원씩 빚을 내어 개업한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아무 인연 없는 사람을 허허벌판에 던져놓는 꼴인데 이건 기성법조인들의 무책임이다. 일본의 경우는 연수원 갓 나온 사람들이 단독으로 개업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다. 최소한 5년, 보통은 7, 8년씩 선배변호사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한다. 월급이라야 판검사 초임보다 조금 많은 정도다. 변호사 수입이 제일 많은 때는 15년 정도 되어야 한다. 일본엔 그런 질서가 잡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실에서 막 나오고 그때 집중해서 돈벌고 그 다음엔 하강곡선이다. 전관예우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법조비리가 해결 안될 것으로 본다.

또 하나, 브로커문제는 형사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회장 할 때에 손해보험협회에 부탁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많이 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한 일이 있는데 그건 정해져 있었다. 거기의 브로커는 손해사정인, 종합병원 원무과의 직원들이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불과 며칠만에 열댓명이 변호사 사무원의 명함을 가지고 줄을 선다. 이게 진짜 사무원들이 아니라 브로커들이다. 그런데 왜 민사사건문제는 기사화되지도 않고, 이야기되지도 않는지 모르겠다.

형사사건문제에 있어서도 각 지방 수임건수를 기준으로 10명씩 추린다고 하는데, 서울의 2,100명 변호사하고 청주 같이 30명 개업한 지역하고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 서울은 100명 추려도 된다. 그 정도 해도 거의 다 조금씩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형사사건 수임료가 고액화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

여년 전부터다. 현직에 있다 나온 사람들 몇몇이 아주 어려운 사건을 맡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게 오랜 일이 아니다.

앞으로 연수원에서 갓 나온 사람들에게 '능력껏 해라' 하고 놓아둔다면 절대 비리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선배변호사 밑에서 월급받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일한 다음에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도 현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지역의 업무는 맡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정종섭: 나도 변호사이지만, 변호사들간에 서로를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출발점 자체에서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같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누가 함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가령 그 사람이 법률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가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 법에 도전하고 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동료일 수 있는가. 아니다. 동질적 친분으로 인식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앞에서 심회장님이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심하게 얘기 안해도 이것은 범죄다. 그런데 이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한교수님이 지적했듯 심하면 범죄고, 심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을 심하게 하면 범죄고 약하게 하면 장난이 되는 것인가? 심하든 약하든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이제 우리는 변호사가 다량 배출되는 시대에 들어갔다. 해서 종전같은 방식의 통제나 정계로는 안된다 고 생각한다. 새로운 형태의 정계, 새로운 방식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김교수님이 지적했듯 전문가로서의 요건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전문가의 자격

을 박탈해야 한다. 의사도 자격을 박탈한다. 그런데 왜 변호사만 유독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것인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러한 가치, 이런 동등한 가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법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아예 법률가 집단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사후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률가단체에서 축출해야지 왜 이걸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을 기화로 반드시 자격박탈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정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의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심판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뿌리뽑자'고 해서 뿌리 뽑힌 경우가 있는가. 자정운동은 기본이고 결국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외부의 운동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운동, 국민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단순히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검찰·법원의 직원, 사무장 또는 병원의 사무장이나 손해사정인 등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서 광범위한 사법감시운동을 하는 시민운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변호사협회 내에 고발센터를 만들고 해서 자기 동료들끼리 고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전관예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뿌리뽑아야 한다. 전관예우는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판사, 검사의 공범구조다. 검사가 그 짓을 하고 판사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웃을 벗고 나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처벌을 해야 한다. 저도 변호사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관예우의 문제는 변호사단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감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감시하는 형태로 가야지 변호사단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나는 헌법학을 전공하고 국가제도를 보는데 우선 법집행에서 공정성이 무너져버린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사법기관은 청렴성이 기본인데, 그게 무너지면 법치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비리가 아니라 범죄다. 그래서 좀더 강한 수준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고, 손변호사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완전히 뿌리 뽑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희선: 유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소비자들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러나 그 원인은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는 게 그간 내 경험의 결론이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소비행태를 교육하지도 않았고, 왜곡된 구조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금 혼동이 되어 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다. 열심히 준비해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에게서는 결과가 별로 안 좋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니 결과적으로 잘됐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과거엔 특히 연수원을 나오는 사람도 없고, 개업하면 순차적으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뛰어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효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 일이 되는 것이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사회현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에서 과거의 경험들이 아직 몸에 남아 있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다른 변호사의 법적 서비스나 방어력을 아직 증명해주지 못해서 소비자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본주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면 안갈 리가 없다. 그러나 불안해서 못 가는 거다. 또 경우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다는 하는 말이, 제 경험에 비추어봐도 약속을 못 지킬 때

가 많다. 그건 재판의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자의 선택의 구조를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보수가 많은데 우리는 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미국 변호사들 중에 엄청난 보수를 받는 사람은 몇 명 있다. 심슨을 맡았던 로버트 샤티로(Robert Shapiro)라든지, 존 코크란(John Cochran)이라든지, 헐리리 같은 사람도 미국의 100대 변호사 안에 든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자유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보수가 매겨진다.

우리처럼 구두로 얼마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 전제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제출한다. 또 주 단위로 명세서를 계속 보내 청구를 한다. 그것을 소비자가 심사를 하고 혹은 전문회 계인을 두고 감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슨 사건을 맡았던 샤플러같은 경우도 하루에 2만불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심슨을 무죄로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없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신을 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 비용, 자신의 명성을 제시하고 심슨이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다.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작업을 하는 고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처럼 특수한 신분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 지식과 팀워크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심슨 사건에서 그는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백인형사 로버트 폴먼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의 과거의 전력, 근무 경력을 모두 파헤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자신이 증거해법이라든지 절차법상 어떤 하자를 찾아낼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전직형사, 법의학전문가, 감정인들로 구성된 수많은 작전팀들을 가동하여 분야별로 훑고 다닌다. 또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수사관련자, 피의자나 피의자관련자들을 찾아 전국을 누비고 실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혈액감정을 따로 시키고, DNA감정을 시키는 등, '나는 이러저러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몇 명이 가동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진행중에도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계속 의뢰인에게 보내고 승인을 받는다.

내가 보스턴에서 한 대형법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엔 자신들의 팜플렛에 변호사들의 전문분야를 기록하고, 각 변호사 시간별 상담비용과 비용에 따른 서비스내용을 공식적으로 명기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1주 단위로 명세서를 발송하고, 의뢰인은 법률자문 전문회계법인에 다시 의뢰하여 감사를 한다. 미국엔 이런 식의 메카니즘이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처럼 단들이 있어서 액수를 홍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에서도 변호사단체등에서 비용에 관한 논의도 끊임없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쓰고 있던 가장 공정한 방식이 시간별 계산방식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결과와 관련해서 종합하는 것이 어떠나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비용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두 경우를 비용만 가지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 많은 보수를 받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한다.

미국식이나 서구의 제대로 된 개념에서 보면 사무장이라는 개념은 없다. 우리나라의 사무장은 변호사의 보조자도 아니고, 일종의 집사같은 이상한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종의 세일즈맨 정도로 보이기도 하다. 이런 사무장은 필요 없어야 되는데, 왜 사무장이 있으며 양성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당직변호사도 분명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가 흉내를 잘못낸 것이지 일반국민에게 호응을 못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단체에서 사회에 대한 자원 재분배차원에서 많이 변호사들이 요율에 따라 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아예 상근당직변호사를 고용해버렸다. 월급을 받으며 폴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한 문화나 의식의 재정립이 단기간에 될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양성될 때 또는 후에라도 소위 보수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체로서의 법률가, 법률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교육이 아무 것도 없다. 연수원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 판사나 검사의 직무교육에서도 끊임없이 교육훈련이 이루어져 법률전문가들의 의식이 전환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호간의 감시와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가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데 법조에 재조, 재야 간의 상호견제와 감시통제장치가 없다. 한 예로 법관기피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론하는 것 자체가 법관에 대한 도전, 모욕으로 되어 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문제가 되어 기피신청이 있으면 감독위원회등에서 청문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호견제가 되는 것이다. 판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비윤리적인 변론을 한다면 판사가 변호사단체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면 한쪽이 한쪽에 종속되는 결과가 없어지게 되고 서로가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게

될 것이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싶은 건, 사법의 3주체인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 혹 가능하다면 공익적인 위치의 학계전문가들까지 초빙하여 공동으로 구성하는, 소위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청원받을 수 있는 고충위원회같은 것을 두면 된다. 그건 사법권의 독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재판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그곳에서 과정을 조사하고 해당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고, 위법이 밝혀지면 징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같은 경우에도 외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여러 가지 사법감시단체가 있다. American Judicial Society같은 단체 같은 곳엔 변호사나 판사, 검사들도 스스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 고발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장치를 하게 되면 서로간의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독일처럼 판사가 잠시 캐리어를 쌓거나 명성을 쌓아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형의 서비스를 통해 대가를 받는 직업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개업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사가 중간에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는 등의 일은 사라질 것이다.

조원표: 결국 이 문제가 변협의 정화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명확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까지 법원에서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단 한 건이 있었다. 이모(某) 판사라고 그분의 남편이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나서서, 판사지만 부인으로서 선거운동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방희선 변호사가 판사시절에 징계를 받을 뻔 한 적이 있었다. 그 외는 한 건도 없었다. 1,500명이 있는 법관 중에서 한 명도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판

사들 스스로도 '변호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기껏해야 실비를 받고 술을 얻어먹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도 한번도 징계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자체 비리 감찰하겠다고 공문을 내렸는데, 오바이락인지 그 다음날 도박검사가 걸린 거다. 그러니 검찰 내부에서는 괜히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나온다. 괜히 공론화해서 마치 검찰에 그런 비리가 많이 있어서 감찰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졌다

는 것이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회로 검찰과 법원의 자정노력이 결들여지지 않는다면 될일이 아니라고 본다. 법조 3륜의 공동의 노력이 나와야 한다.

한인섭: 검사의 전관예우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본안사건화되어야 기록에 나타나는데, 검사는 전화 한 통화로 사건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검사의 전관예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비리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브로커를 어떻게 적발할 것인가 하느냐도 체계적으로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비리는 형사사건이라는 데 일치된 공감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잘못된 구속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선 구속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생활의 변화도 있고 육체적 고통도 크고 변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자신의 방어기회도 박탈당하고 구속기간도 1년 가까이 된다. 이런 구속의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수천만원은 넘을 것 같다. 그렇다면 수천만원을 들여서 그 고통과 맞바꿀 수 있다면 비꾸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계산에 있어서 구속의 고통이 크지 않고, 구속 자체가 적어지고, 불구속수사·재판이 원칙으로 되고, 혹은 구속됐다하더라도 자기방어권

행사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 풍토가 된다면 고비용으로 불합리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유혹은 없어질 것이다. 결국 전관예우라는 문제는 국민의 신체를 인질로 잡아서 인질 석방금을 흥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도 가능하다.

현직 판사, 검사들이 유착되어 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적발하는냐의 문제는 결국 법원과 검찰의 책임이다. 우연히 한 건 드러난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앞으로 행정적인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여 해당 지검장이나 법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이것을 직원이나 판사, 검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같은 전문가 집단인 의사에게는 민사상, 심지어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률가들에게도 고의성이 발견되었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종섭: 요즘 은행에서 쓰는 방법인데, 은행 본점에서 고객에게 수시로 설문을 보낸다. '당신이 거래하는 지점이 어디나, 서비스는 잘하느냐, 불편한 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수시로 오는데, 이처럼 변협에서도 수시로 의뢰인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느냐, 서비스는 충실히 하느냐, 누구의 소개로 가지는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사후에라도 보내 체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 동료들끼리 뭐 그리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을 과감히 깨고, 서로간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형철: 사법정의라는 것은 결국 한 마디로 말하면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절대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죄와 벌의 관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법정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절차를 불행히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이 단 한 명도 길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외중에 죄없는 사람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죄없이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주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으면, 역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절차상의 공정성이 의도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법 3륜의 투명성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는 비전문가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서비스해서 자신의 수입을 삼아가는 사람이기에 소비자는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문가의 신뢰가 중요하다.

미국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영장을 발부받고 Undercover Agent를 투입해서 조사해내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조계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칼을 대는 그런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본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 한번 큰 선언을 해서 이제 까지는 탕감해주는 비슷한 방법으로 탕평책을 써서 이제부터는 범죄의 비리유형까지 공표하고, 또 외국의 경우처럼 변호사들의 승소율까지 기록화하여 공개하는 방식도 괜찮을 듯하다.

요컨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아끼지 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칠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없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다. 제 경험에도 브로커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브로커의 문제는 뿌리 깊은 문제이고 상당히 광범위

해지고 있다. 검찰, 법원의 직원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주변의 일반인들까지도 브로 커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건을 적게 하는 사람이라고 리베이트를 안준다고 단언하시는 말이야 한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어차피 관행화되어가는데 정말 결단을 내어 거부하느냐 안하느냐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리베이트체제가 온존할 수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시민 간의 직접적인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알아야 선택을 하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다. 특히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재조의와 친소경쟁을 벌였지 시민들에 다가가려는 경쟁을 벌인 적이 없다. 몇몇 변호사들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상을 보이기 위해 얼굴도 알리고 이름도 알리고 한 것이다. 그것의 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른바 '소개'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업종에 있는데 다만 합법화되었는지 불법화되느냐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만 있는 것이다.

아주 양심적이고 재능 있는 미술가가 있다고 치자. 그는 화랑이라는 합법공간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데 변호사에게는 그런 공간이 없다. 결국 자신이 해야 하는데 직접 나서서 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는 부분이 바로 '브로커시스템'이다.

브로커시스템을 연결시켜주는 2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리베이트 구조이고, 하나는 시민들의 의식이다. 예컨대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개 자신이 좀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느냐를 먼저 문의한다. 타인의 일일 때는 공정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이나 주변의 일일 때는 절차의 공정성을 거친 최선의 결과를 얻기보다는 어느느느 검사 담당인데 알지 않느냐 혹은 누가 가장 효과를 보는 변호사일까 하고 먼저 생각하고 문의해온다. 이것이 시민들의 의식 속에 늘 잠복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이기심 속에 포함되어 있다.

리베이트체제가 만약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리베이트체제와 고액수임료는 동전의 양면관계이다. 수임료가 높은 이유를 고개에게 설명하는데 쓰는 용어가 이른바 '전관예우'이다. '나온지 얼마 됐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전관예우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로커들에 의해서다. 그래서 리베이트체제를 끊는 가장 확실한 고리는 사건 수임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가 무슨 사건에 얼마를 받았는지 또한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뒤에 15분 가량 녹음이 안되어 녹취를 할 수 없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슬아, 사랑하는 혜수야

서준식

두번째 편지

사랑하는 보슬아, 사랑하는 혜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즉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 다 주어버리고 싶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착해진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셰어' 하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착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예뻐진다. 친구들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가 가진 마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못생겨도 착한 마음을 가진 친구 얼굴은 보기에도 기분이 좋다. 잘생겨도 나쁜 마음을 가진 친구 얼굴은 어딘가 기분이 나쁘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착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도 착해지고 예뻐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보슬아, 사랑하는 혜수야.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너희들을 만나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 아빠는 자꾸만 스스로 착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빠는 자꾸만 스스로 예뻐지고 있다 고 느낀다.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아빠는 언제까지나 착하고 예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너희들이 찾아와주어서 정말 기뻤다.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안경을 쓰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아빠를 보고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한 보슬이 말이 기뻤고, 혜수가 데리고 와준 곰곰이를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기뻤다. 둘 다 바이엘 상을 끌렸다는 이야기도 기뻤고, 둘 다 아빠가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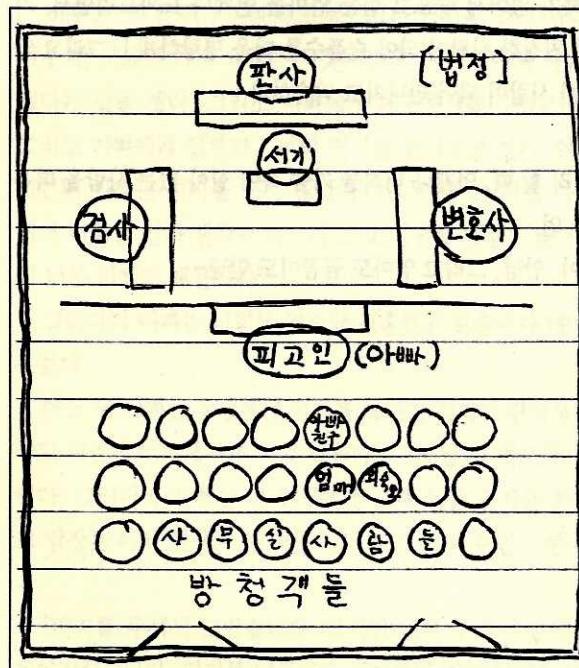
아빠와 너희들이 만난 장소를 '면회실'이라고 하는데, 그 면회실에서 조금도 울지 않았던 너희들

은 정말 홀륭했다. 그리고 울지 않았던 너희들이 아빠는 고맙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울면 아빠도 덩달아 눈물을 터뜨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울어버리면 그 짧고 아까운 시간에 이야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울면 헤어지고 난 뒤에 모두 마음이 아프고 언짢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울어버리면 창피하지 않느냐?

헤어질 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너희들과 했던 뾰뽀는 정말로 유리창 없이 뾰뽀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평생 그 뾰뽀를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빠는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새해에 (그러니까 앞으로 40번 정도 자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은 아래 그림처럼 하게 된다.

이 재판하는 방을 '법정'이라고 하고, 이런 방들이 많이 모인 큰 건물을 '법원'이라고 한다.



검사 - 아빠를 잡아들이고 조사하고,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변호사 - 아빠를 도와주는 사람. 아빠가 잘못한 것이 없고, 만에 하나 잘못한 것이 있어도 서준식씨는 착한 사람이니까 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검사가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이다. 아빠도 피고인이다.

이 세 사람(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아빠가 나쁜 사람인가 벌을 받아야 한다. 아니다. 착한 사람이고 잘못한 게 없으니 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 토론은 때로는 하루만에 끝나지 않고 며칠 쉬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한다.

세 사람이 토론하는 내용을 판사는 열심히 듣고 서기가 빠짐없이 적어둔다. 방청객은 이 토론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고 엄마도 아빠 친구나 사무실 사람들도 구경하러 올 거니까 모두 방청객이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의 토론을 끝까지 열심히 듣는 판사는 토론이 모두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아빠를 풀어줄지 계속 감옥에 가두어둘지, 그러니까 벌을 줄지 안줄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판결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재판'이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풀어주면 이 '재판'을 안 받고 도망가버릴까봐 판사는 우선 아빠를 가둬두고 있는 것이다. 참 웃기는 일이다. 아빠는 도망갈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도 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랑 너희 엄마랑 함께 집에 있을 건데도 말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판사는 아빠를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아빠는 나쁜 짓을 안했으니까… 아빠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인데, 검사는 그것이 좋은 일인지 모르고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서 아빠를 잡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재판' 때 검사와 토론하면 아빠가 이길 것이고 그것을 듣는 판사는 아빠를 풀어줄 것이다.

기다려라. 늘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가 없어서 슬프고 힘든 엄마를 언제나 도와드리면서. 기다려라. 늘 해처럼 명랑하게. 친구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 슬플수록 더욱 명랑하게! 그리고 약속하자. 언제 우리 다시 만날 때 더욱 착한 사람이 되어 만나자고 약속하자!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쁜 마음이 생기려 할 때, 언제나 너희들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사람을 떠올려다오. 그 사람의 이름은 - 유 · 관 · 순 · 언 · 니 -

다음에 또 편지 쓰겠다. 보슬아, 혜수야, 안녕. 그리고 엄마도 곰곰이도 안녕….

1997년 11월 28일

아빠가 쓴다.

세번째 편지

보슬아, 혜수야.

편지란 것은 참 고마운 거다. 아빠는 이렇게 멀리 있어도 너희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편지에 감사하고 싶다.

옛날 아빠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편지를 무척 좋아했다. 그 무렵 아빠는 아빠 동생들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썼는데, 쓴 편지를 봉투에 넣어 전에 꼭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그 친구는 아빠가 편지를 너무너무 잘 쓴다고 칭찬해주었고, 그런 편지를 자기도 받아보고 싶다고 말하고는 했다. 하지만 아빠는 그 친구보다 아빠의 동생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편지를 쓰지 않고 동생들에게만 편지를 썼다.

하루는 그 친구가 아빠에게 헤어지는 인사를 하러 왔다. 편지를 하도 좋아해서 우체부가 되어 아주 먼 시골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먼 시골에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갖다주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아빠에게 메모쪽지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했다. "너의 편지를 받아보고 싶어. 언제 한번 편지를 쓰고 이 주소로 부쳐줘." 그런데 아빠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무렵 아빠는 너희들 엄마를 처음 만나 사랑하게 되어 너희들 엄마 생각만 하느라고 그 친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아빠는 너희들 엄마랑 결혼했고 보슬이가 태어나고 혜수도 태어나고 정신없이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아빠는 동생에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편지를 무척 좋아했던 그 친구 생각이 났다. '지금도 시골에서 우체부를 하고 있을까…' 옛날 그 메모쪽지를 찾아내어 아빠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아빠는 그 친구에게 그때 처음 편지를 쓴 것이다. 며칠 지나 답장이 왔다. 그런데 그 답장은 아빠 친구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친구 부인이 쓴 것이었다. 그 답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편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주셨어요. 저의 남편은 큰 병을 얻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편지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저의 남편은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매일같이 서준식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너무 잘 쓰시는 서준식씨, 그 사람 편지를 한번 받고 싶다… 라고요."

아빠는 마음이 아팠다. 편지 한 통 열심히 쓰고 그 친구에게 주었으면 그 친구는 힘을 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병을 이겼을지도 모른다. … 아빠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울었다.

보슬아, 혜수야.

편지는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다. 편지로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친구에게 사과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못 할 때 우리는 편지지에 "미안해!" "널 사랑해"라고만 써서 부치면 된다. 그리고 어쩌면 편지는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힘과

리고 싶은 사람을 편안하게 웃겨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빠도
난다.

쓰기 전에 한번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말고 솔직히’ 다 써버리는 것이다. 또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쓰면 되는 것이다. 아빠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뚱누는 이야기나 죽은 친구 이야기까지

은 편지도 잘 쓰게 된다. 책을 많이많이 읽어라. 뭐가 쓰여 있는
책에 멋있는 말이 있으면 그대로 편지지에 옮겨 써도 된다.
봉투도 사고, 우표 파는 데가 어딘지,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범준이나 이경이에게도 미국에 있
자!!

●
●
●

자료 및 성명서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12월 11일에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노동운동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영남노동운동연구소의 내부토론회의 주제발제문입니다.

외환위기의 원인과 IMF 구제금융의 영향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1. 머리말

지난 11월 21일 정부는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후 IMF 조사단과의 협상을 거쳐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12월 3일 밤 「대기성 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최종 합의,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은총재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IMF 등 3개 국제금융기구 지원금 350억달러, 미국 일본 등 7개국 협조융자 200억달러 등 총 550억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원자금은 IMF 자체자금 210억달러, 세계은행(IBRD) 100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달러, 미국 50억달러, 일본 100억달러,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 각 10억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언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경제신탁통치, 경제법정관리란 치욕을 당했다고 해설하고 있고, 11월 21일을 국치일로 일컫는 사람도 있다.

언론과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란하다. 대기업들은 대량해고를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대단히 불안하다.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소나마 고통을 분담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위기가 왜 초래되었는가를 분명히 해야

올바른 대응도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위기 예방에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수행 오류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정책을 결정한 여당이므로 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도 여당의 지원으로 경기도 지사를 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국민회의 역시 국정의 방향 결정에 참여했으므로 일정하게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부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보좌해온 경제판료들과 이들과 협력한 경제학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책임 전가 태도는 진정한 원인을 가릴 우려가 있다. 현재의 금융, 외환위기는 순환적인 경기불황이 아니며 정부가 일시적 경기대책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박정희시대부터 30여년간 누적된 모순이 개방경제를 맞이하여 폭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IMF 긴급자금지원을 야기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IMF 구제금융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게 될 때 한국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살펴본 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외환위기의 원인

국제통화기금(IMF)은 4일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을 확정한 뒤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 특히 외환, 금융위기의 원인과 구제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다음은 최근의 한국 외환, 금융위기를 보는 통화기금의 시각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 한때 가난했던 농업국이 선진된 산업경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미시부분에까지 세세하게 간섭해온 정부의 개발체제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간섭의 유산은 금융분야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금융분야의 비효율성은 기업분야로 이어졌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 올해 한국의 거시 경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국내수요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 총생산은 첫 9개월 동안 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물가상승률도 4% 정도였다. 수입감소와 수출의 급속한 회복으로 2/4분기 들어 경상수지 적자폭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전례없이 많은 숫자의 재벌들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강과 자동차 부문에서처럼 일부 분야에 과잉투자가 있었던 점, 그리고 경기하강기에서 기업이윤이 떨어진 점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재벌 도산은 금융부분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상환 불능의 부실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나 국내총생산의 7.5%선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증권시세의 급격한 하락은 은행의 재산물권 가치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발전은 이미 문제가 많은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금융기관은 감시·감독 부재, 가격정책과 위기관리 경험 미숙, 상업적 바탕의 부족 등으로 이미 취약해져 있었다. 금융부분의 취약한 상태 때문에 국제신용기

구들은 잇따라 한국의 금융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자본의 가용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한겨레신문』, 1997. 12. 6.).

IMF 협의단이 IMF 이사회에 제출한 비공개보고서에 의한 위기 원인 진단을 보면 '동남아 외환위기 여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과 기업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부적절한 시장규제, 정치적 제약으로 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부채에 의존해 외형만 부풀려온 재벌과 유착한 금융기관들이 가담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재벌들의 과다차입과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한국경제구조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근본 경제여건의 악화에다가 경제주체들의 비효율적인 경제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근본경제여건의 악화

정부 고위 정책관료들은 계속하여 한국경제의 근본경제여건이 양호하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실은 외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은 누적되어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수지 등의 면에서는 그런대로 성과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대규모에 이르고 이에 따라 외채가 증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의 결모습은 멀쩡했지만 실제로는 안팎의 빚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1) 기업의 수익성 악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한 배경에는 불황의 심화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배당수익의 감소)가 있다. 1995년 3/4분기 이후 공황에 진입하여 1997년 4/4분기 현재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¹⁾ 경제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선진국 불황에 비하면 높지만 재고 급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96년 3, 4분기의 재고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 반도체 110%, 철강 82.6%, 자동차 43.1% 등 주요산업의 재고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불황 속에서 투자가 위축되었다. 산업은행의 「97년 산업설비투자전망」에 의하면 97년도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96년보다 0.9% 늘어난 57조4천4백32억원으로 예상되고 제조업 설비투자는 96년 보다 6.1%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두드러져 석유화학 -35.1%, 조선 -34.4%를 나타냈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30대 계별의 97년도 설비투자계획은 44조 9,400억원으로 96년도 추정투자액인 44조6,900억 원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은 수치이다. 환율 상승과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투자는 감소한 것이다.

불황 속에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진다. 매출액 증가율은 95년 상반기의 22.8%에서 96년 상반기에는 11.3%로 내려갔다가 97년 상반기에는 9.1%

1) 일부 논자는 경제위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경제위기론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제기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했지만(체만수,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세토론회 자료집, 1997년) 이것 은 정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체만수씨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8년의 경제성장률이 12.4%였는데 89년은 6.8%로 현격하게 낮아져서 부풀려진 거품을 걷어내면 마이너스성장을 했을 것이므로 89년과 90년의 상황은 경제위기라는 것인데 이것은 공황은 마이너스성장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입각한 인식이다.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의 경기조절정책에 의해 생산의 증감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되어 공황기에도 마이너스성장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둘째, 10년 기간의 고정자본 개신기간이라는 마르크스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89~90년의 경제위기 이후 아직 10년 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공황이냐라는 선협적 예단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 하에서 는 극소전자혁명 등으로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정자본의 개신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 실업률의 상승과 불안정고용의 증가, 재벌기업까지도 여럿 도산된 것, 복합불황 가능성의 전망 등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과장되게 선전하여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누그려뜨리려는 자본가들의 행동은 불황기에는 언제든지, 어떤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위기의 존재 자체가 노동운동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공황 하에서 취업노동자의 경제투쟁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공황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으로서 실업자운동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을 격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자계급은 경제공황에서 입게 되는 실업에 대해서 사회적 보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경제공황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적 모순 자체의 시정과 급복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에 그쳤고, 매출액경상이익률은 95년 상반기의 4.2%에서 96년 상반기 1.8%, 97년 상반기 1.4%로 급락하였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도 95년 상반기의 21.9%에서 96년 상반기에는 3.4%에 머물렀다. 현대증권의 조사에 의하면 1996년 12월 결산 상장기업 515개사의 96년 영업실적은 95년보다 14.6% 증가했지만 순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56.7%, 51.7%나 줄어들었다. 12월 결산 549개사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73.3% 준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당초 개별회사가 공표한 것보다 순이익규모가 36.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로 보면 83.1% 줄어들었다. 지난해 순이익의 16.9%밖에 올리지 못한 것이다. 30대 재벌 중 적자를 낸 재벌이 13개나 된다.

수익성 악화의 결과 기업부도도 증가했고, 30대
재벌 가운데 우성건설그룹이 도산했고(96년 1월),
전영이 8월에, 삼익악기가 10월에 도산했다. 건설업
체의 부도가 가장 심각하여, 주택건설업체들의 조직
인 주택사업공제조합 회원사 중 부도건수가 94년 39
건, 95년 149건에서 96년에는 9월까지만 279건이나

발생했다. 97년에 들어와서 한보, 기아, 진로, 대농, 뉴코아재벌 등이 부도를 내고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에 빠졌다.

이러한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순매도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2)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의 누적

1995년 하반기 이후의 이번 공황은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를 동반했다.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96년에 들어와서는 203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경상수지 적자는 237억달러에 달하여 96년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국제통화기금이 설정한 경고수준인 5%에 육박한 수치이다.

〈표 1〉 국제수지 추이(단위: 억달러)

	93	94	95(A)	96(B)	B-A
경상수지	3.8	-45.3	-89.5	-237.2	-147.7
무역수지	18.6	-31.5	-47.5	-152.8	-105.3
무역외수지	-19.7	-19.9	-36.4	-76.8	-40.4
이전수지	4.9	6.0	-5.6	-7.6	-2.0
자본수지	68.8	90.2	134.2	172.3	38.1
장기	89.0	58.6	78.3	118.1	39.8
단기	-20.2	31.6	55.9	54.2	-1.7
종합수지	65.4	28.2	30.3	-57.4	87.7
경상수지/GDP(%)	0.1	-1.2	-2.0	-4.7	-2.7
자본수지/GDP(%)	2.1	2.4	2.9	3.4	0.5
종합수지/GDP(%)	2.0	0.7	0.7	-1.1	-1.8

자료: 한국은행, 「경상수지 대폭 확대의 원인 분석」,

1997. 2. 에서 인용.

경상수지 적자의 대폭 확대로 자본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합수지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적

자를 기록했다. 무역 및 무역외 거래에서의 적자를 장단기 차본도입으로 메꾸어오던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이 외환위기의 시발점이었다.

1996년중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주로 수출단가 급락, 엔화 약세,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심화, 소비재 및 에너지 수입 급증, 무역외수지 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 첫째, 1996년에 수출물량은 19%나 늘었으나 주요품목의 수출 가격이 13% 급락함에 따라 금액기준 수출이 3.7%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의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1995년중 높은 수출 증가를 주도 하였던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과 화학제품, 철강·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단가가 급락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율은 전년의 40%에서 62%로 높아졌으나 수출단가가 43%나 하락하여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96년중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4.2% 절하되었으나 대엔화 환율은 11.5% 절상되었다. 1990년까지 대미 수출 상위 5대 품목 중 일본과 공통되는 품목은 전기·전자와 일반기계의 2가지였으나 1995년에는 전기·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등 4개 품목으로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대(對)선진국 수출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96년에 들어 지가도 상승하고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제조업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GNP 중 제조업 비중이 1988년 33.2%로 최고수준에 달했다가 96년에 25.8%로 떨어져서 몇 년 사이에 무려 7.4% 포인트나 감소했다. 그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56.2%에서 67.6%로 10% 포인트 이상이나 늘

어났다(표 2). 선진국들이 만불소득에 도달했던 시기인 1981년 당시 제조업 비중은 독일이 46%, 일본 39%, 영국 42% 등으로 높았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통해서도 제조업의 비중 저하를 볼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1987년 27%에서 94년에는 23.7%, 96년에는 22.5%로 저하했다. 1991년 499만4천명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수가 줄기 시작하여 96년 3월 현재 469만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자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제조업 취업자에 대하여 승진, 임금이나 산업체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우가 좋지 않아서 종업원들이 제조업체를 이탈하기 때문이다. 분배관계에 영향을 받은 생산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금융, 보험, 통신 등 생산적 서비스산업은 발달수준이 낮아서 높은 금융비용과 물류비용이 초래되는 반면, 교육, 국방 등 비생산적 공공 서비스 부문과 유통음식업 등 소비적 서비스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자 비중이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비중보다 낮은 나라는 경쟁국들 중 한국뿐이다. 한국은 1996년 11월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1%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 비중 28%보다 7%나 낮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94년 기준으로 일본은 23.2% 대 22.4%, 대만 27.8% 대 21%, 싱가포르 27.0% 대 22.8%, 독일 28.7% 대 15.1%로 모두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제조업 상품을 팔아서 원자재(곡물, 석유, 철광석 등)를 사오는

구조인데 컨설팅 엔지니어링, 오락상품 등 서비스 수출이 부진한데 제조업이 쇠퇴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라는 대외경제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넷째, 96년 소비재 수입이 21%의 높은 증가율(전년 대비 30억달러 증가)을 나타내었으며 소비재의 수입증가기여율도 1995년까지의 10% 내외에서 1996년에는 20%로 급상승했다. 세부품목별로는 의류(13억달러, 39%증가), 신발(4억7천만달러, 35%), 가구(4억7천만달러, 30%), 승용차(1억3천만달러, 3000cc 이상, 98%), 골프용품(1억1천만달러, 76%) 등의 수입이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산소비재가 수입소비재에 비해 저가품은 가격면에서, 고가품은 품질 및 성능면에서 뒤떨어짐에 따라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침투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 내수용 소비재 수입 중 고급품 수요 증대에 따른 수입이 44%, 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악화에 따른 수입이 14%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42%가 국내 생산부족 또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이다. 직접적인 소비재 수입 외에 소비재 국내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까지 감안할 경우 소비를 위한 수입 증가분은 약 79억달러로 추정된다. 사치적 소비재 수입 증가는 고지가, 고금리에 따른 불로소득의 증가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된 것이 큰 원인이다.

다섯째, 에너지 수입액이 1995년중 23%(36억달러) 늘어난 데 이어 1996년에는 27%(52억달러) 나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이 242억달러로

〈표 2〉 GNP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단위: %)

	GNP의 산업별 구성				산업별 취업자 구성			
	1982	1988	1992	1996	1987	1990	1992	1996
농림어업	14.7	10.5	7.6	6.3	21.9	17.9	15.8	11.6
제조업	30.4	33.2	27.6	25.8	27.0	27.2	25.5	22.5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55.0	56.2	64.7	67.6	50.0	54.5	58.4	65.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호.

2) 주로 한국은행, 「경상수지 대폭 확대의 원인 분석」, 1997. 2.에 의함.

총수입의 16%, 무역수지 적자액의 1.6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인하여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및 냉난방 용 에너지수요 증대에 따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85년 1.15석 유화산톤에서 90년 2.17톤, 95년 3.35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여섯째, 1996년 중 무역외수지 적자가 전년의 36억달러에서 77억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여행수지 적자는 전년의 12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운수 및 보험수지 적자는 1억달러 미만에서 17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여행자수는 93년 242만명에서 95년 381만명, 96년 465만명으로 급증(외국인 입국자수는 95년 375만명에서 96년 368만명으로 감소)하고 1인당 해외여행경비 지급액도 1,611달러로 외국인 입국자의 1,324달러보다 높았다.

〈표 3〉 무역외수지 동향(단위: 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무역외수지	-19.7	-19.9	-36.4	-76.8
수입	182.5	225.5	298.6	306.5
지급	202.5	245.4	335.0	383.3
운수 및 보험	-6.5	2.4	-0.5	-17.4
여행	-5.7	-11.7	-11.9	-26.2
투자수익	-13.3	-16.7	-24.0	-25.5
기타	5.9	6.1	-0.0	-7.8

자료: 앞의 표와 같음.

국제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보유고도 감소하여 1995년 말 327억달러에서 96년 6월 말 36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11월 말에는 322억달러로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은 3개월 분 수입분을 충족하는 외환보유고를 적정 규모로 권장하는데 한국은 2.5개 월치로 권고수준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1997년 10월 현재 3백억달러의 외환보유고도 허구적인 숫자라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외환보유고에는 언제든

지 현금화할 수 있는 대외자산만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현금화가 어려운 대외자산까지 포함시켜 수치를 부풀렸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이용, 해외에서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올려왔는데 이것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제수지 적자 확대로 외채가 크게 늘어나 1989년 294억달러, 95년 말 789억달러에서 96년 6월 말에는 932억달러를 기록했고, 11월 중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 총외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년 13.3%에서 96년 말에는 21%에 달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총외채 경고선은 GNP의 30~35%이다. 더구나 상환기간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93년 말 43.7%에서 8월 말 기준으로 58.5%(5백70억달러)에 육박하게 된 '불량한 외채구조'가 문제가 된다. 96년도 외채 상환액도 원금 40억달러, 이자 60억달러로 사상최대 규모인 100억달러에 이르렀다.

실제로 단기외채의 대규모화는 외환위기를 직접 불러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외채는 1997년 9월 말 현재 1,196억달러에 이르고 이중 단기외채는 6백56억달러로 단기외채 비중이 무려 54.8%에 달했다. 그러나 이 외채통계에는 사실상의 외채인 '현지금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현지금융규모는 9월 말 현재 512억달러로 대부분 단기외채이다. 따라서 한국이 안고 있는 단기외채 규모는 1천억달러에 달했다. 정부가 왜곡된 외채구조를 방임한 이유는 단기차입금의 이자가 장기차입금보다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계속 들고 있을 때는 단기차입금이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외국 금융기관들이 지난 9월부터 단기외채 상환을 연기해주지 않고 돈을 거둬가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매달 상환 요구가 돌아오는 단기외채가 대략 100억달러에 가까워지다 보니 300억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는 금방 바닥이 났다.

이같은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 누적으로 아시아 각국과 함께 한국도 1994년 멕시코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9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4.7%로 위험 수준이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보전되는지 또는 유출입이 빈번한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에 의해 보전되는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데 직접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갑작스런 자본 유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 외국인 순직접투자와 경상수지 합계액의 대 GDP 비율의 음의 숫자가 커질수록 당해 국가가 단기성 투기자금에의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5%로 멕시코의 -5.6%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기 투자수익을 노린 핫머니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경제주체들의 경제운영의 비효율성

기업경영, 금융기관 운영, 정부경제정책 운영이 모두 비효율적이었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1) 정부의 정책 대응 오류

〈표 4〉 동아시아 5개국(1996)과 멕시코 경제(1994)의 비교(단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멕시코
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73.0	186.0	84.0	55.0	109.0	20.0
경상수입 대비 외환보유고(개월)	4.4	3.7	3.4	2.5	6.6	1.0
GDP 대비 총외채	47.0	39.0	54.0	21.0	46.0	35.0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3.7	9.7	1.7	4.7	7.7	7.8
GDP 대비 국내저축	29.0	32.0	19.0	35.0	36.0	15.0
GDP 대비 재정적자	-2.4	0.7	0.9	1.0	2.9	-0.7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합	-1.8	-3.8	0.0	-5.0	-7.5	-5.6

자료: 한국의 수치는 「주간세계」, 1996. 12. 18. 및 기타 자료.

다른 나라의 수치는 「The Economist」, 1996. 8. 24.의 「Emerging Asia's sombre era」에서 인용.

이번 외환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대응의 오류로 증폭되었다. 연초 한보철강 부도 이후 대내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적절한 정책을 필요 한 시기에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 부실 종합금융사 문제와 외환위기 가능성성이 지난 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경고와 함께 대책 마련을 건의했는데 사실상 묵살됐다.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기 시작한 10월 중순부터 정부 내 실무전문가들은 재경원 금융실장·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팀 수뇌부에 외환사정 위험을 보고 했다. 외환보유고가 시중은행 해외지점에 뮤여 있어 위험하므로 IMF 지원은 물론 외채상환 불능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모라토리움대책까지 필요할 지 모른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경제 기초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대통령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강드쉬 IMF총재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여러 해 전부터 계속된 IMF의 경고를 무시, 결국 금융파국 위기를 호소하며 다급한 지원을 요청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월 2일 태국에서 열린 국제노조연맹 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이 지난달 21일 IMF의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할 당시 "열흘 이내에 중대한 금융파국이 닥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다급히 호소해왔다고

공개하면서 현재의 위기상황은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무모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이들은 몇 가지 예를 든다. 우선 11월 초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올해 말까지 깊어야 하는 외채 상환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금융위기를 보도했을 때의 일이다. 한국정부는 “외국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보도한다”면서 홍보조정 차원의 반박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근본(fundamental)은 괜찮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인 정부·재벌·금융간의 유착관계, 재벌중심 경제구조, 금융의 부실화, 재경원의 관료주의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도 “근본은 괜찮다”는 발상이 “매우 무모하다”는 것이다. 더욱 무모한 대응은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날 때 가서야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이처럼 무모한 한국 정부와 관리들의 태도를 보아온 터라,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이 긴급 구제금융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한국정부가 과연 통화기금과의 합의대로 고통스런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해낼지, 그리고 곧 새로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가 지금 이뤄진 합의에 그대로 동의할지 등의 중요한 단서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부가 위기관리능력이 형편없게 되었는가. 이것은 정치세력과 재벌과의 유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시장경제논리에 매몰되어 경제위기관리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 시장경제논리는 바로 경제력을 장악한 재벌의 논리이다. 기아자동차 부도위기 사태 때도 삼성의 기아인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다 기업의 자금난과 금융기관의 부실 심화, 대외신인도 하락을

부추겼다. 동남아 외환위기 때 재경원이 좀 더 빨리 효과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대규모 IMF 긴급금융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외환위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의 『디 차이트』지는 12월 4일 동남아 금융위기 전체를 조망한 논평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간의 불균형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전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정치적 발전이 경제 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경제가 국민복지보다 국가나 권력층의 강화에 역점을 두는 과도한 민족주의와, 정치인이 경제, 금융계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정치적 고객주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아시아 각국 정부가 국가정책에 대한 권력자의 설명의무, 법치주의, 정치 투명성, 의사결정과정의 국민 참여 등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4가지 덕목을 무시했다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경제발전보다 정치발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재벌체제

그러나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재벌체제이다. 재벌 위주 경제개발모델은 1961~79년의 박정권 시대가 전성기였는데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어가자 쇠퇴하기 시작했다. 과다차입에 의한 재벌의 과잉증복투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 1980년의 경제위기도 중화학공업분야에서의 재벌대기업들의 과잉증복투자 때문에 발생했다. 1980년에 GNP가 6%나 하락하고 수출은 1983년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1983년초에 일본이 40억달러의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하여 간신히 외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40억달러는 한국외채의 10%, GNP의

5%정도 규모로서 18억달러의 정부간 차입과 22억 달러의 일본수출입은행 차관으로 구성되었다. 전두환정권은 그 대가로 한국시장을 은행 및 보험회사 등과 같은 일본과 미국의 서비스산업에 개방하였고, 미국의 쌀, 밀, 담배, 과일 등의 수입개방을 허용하였다.

이번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야기한 것도 재벌이다. 정부는 재벌을 육성지원해온 책임이 있지만 이제는 재벌이 너무 비대하여 정부조차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중소기업 부문은 압박을 받아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와 만성적 수입의존구조로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이다.

계열기업을 총수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경영을 독점하는 재벌은 호경기때는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경영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제2세 총수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과도한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했다. 진로(장진호), 한화(김승연), 삼성(이건희) 등이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재벌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의존해 과다한 차입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만을 추구하여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부문에 과잉증복투자를 강행했고, 그 결과 개방경제 하의 격심한 경쟁에 패배하여 연쇄부도가 난 것이다.

정부 금융특혜의 부작용으로 재벌기업은 과다한 차입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대단히 취약하다. 1995년 말 현재 30대 재벌그룹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22.3%로,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평균치 32~36%나 경제발전 정도가 엇비슷한 대만의 53%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삼미·한라·진로그룹은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이 2~3.8%였고, 한일·뉴코아그룹도 10%에 못미쳤으며, 97년 1월 부도가 난 한보그룹은 11.8%에 불과했다. 과중한 부채는 막

대한 금융비용 지출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경쟁력 실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정부가 저리의 정책금융을 내주면서 기업들이 차입을 많이 할수록 앓아서 폐돈을 벌었고, 그때의 습성을 재벌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금리’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3고’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은 금리가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빌린 돈의 규모 자체가 큰 데 원인이 있다. 한국은행이 제조업체 원가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금융비용은 매출액의 5.6%인 반면, 일본기업은 0.4%에 불과했다(『한겨레신문』 97. 3. 8.).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에 재벌은 주기적으로 기업부실에 시달렸다. 기업부실 문제가 80년대 들어와서 크게 제기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관치금융을 통해 재벌기업을 특혜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재벌기업들이 돈빌리기를 끼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60~70년대의 인플레 기조 하에서는 큰 혜택이었지만 인플레가 어느 정도 수습되기 시작하는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벌의 경영상태는 외형은 팽창했지만 내실은 허약해져갔다. 벡켄지 컨설팅사에 의하면 19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한국의 20대 대그룹은 평균 연리 13%에 자본을 조달해 11.9%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줄곧 밀지는 장사를 해왔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에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뽑은 500대 기업은 연리 11.1%에 자본을 조달하여 18.9%의 높은 수익을 올림으로써 한국 기업과 대조적인 경영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재벌들은 96년에 거액의 적자를 내면서도 계열사 대여금을 늘리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96년 말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12개 재벌(한보 포함시 13개)이 적자를 냈다. 삼미 2,520억원, 한진 1,913억

원, 한화 1,849억원, 진로 1,565억원, 기아 1,294억 원, 한일 1,198억원, 주산 1,080억원 등이 1천억원 을 넘는 적자를 냈다. 이처럼 수지상황이 나빠졌음에 도 계열사와 재벌총수의 친인척, 종업원 등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빌려준 돈은 95년 5조3,407억원에서 96년에 7조4,397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 대출금 역시 늘어나서 10대 재벌의 은행대출금 잔액은 95년 말 25조3,101억원에서 96년 말에는 32조9,824 억으로 증가했고 97년 6월말에는 38조5,02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7월말 현재 33개 생명보험회사가 30대 재벌에 빌려준 대출잔액은 8조16억원에 이른다. 재벌들은 금융대출금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삼성그룹은 96년 한 해 동안 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은행이 3개가 추가되어 16개로 늘어났고, 한미은행에 대한 지분을 95년 말 5.8%에서 18.56%로 높였다. 기아의 경영위기와 법정관리 사태도 다른 재벌들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재벌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아가 국민기업적 요소를 기반으로 종업원 경영 참가 등 궁정적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입 의존, 방만한 사업 확장 등 재벌의 일부 행태를 추종한 것이 내부적 요인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뒷받침을 받은 삼성의 무리한 자동차산업 진출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과잉시설 문제가 가중되어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삼성재벌의 자동차사업 신규진출이야말로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삼성전자 가 반도체 수출로 수조원의 이익을 올리자 일본 자본은 크게 경계하였다. 마침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광이고 자동차사업에 진출할 뜻이 있음을 알고 일본자동차업체 중 도요타에 놀리고 있었던 닛산의 모델 하나를 삼성에 제공하여 자동차에 뛰어들도

록 유도하였다. 자동차사업 진출로 삼성전자의 이익이 소진되자 삼성전자도 경영난에 빠졌고, 기아자동차를 공략하다보니 마침내 국가경제 부도사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자본의 교묘한 책략에 말려든 결과가 된 것이다.

외환위기에 대해서 외국 언론들도 대부분 재벌체제를 핵심적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기적의 종말」이라는 제목 아래 「현 위기의 근본원인은 40여년 전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내재되어왔다」고 진단하였다. 한국정부의 주도 아래 은행들은 몇몇 전략산업에 특혜금융을 무한정으로 주어 36년만에 수출량을 3,300만 달러에서 1,300억달러로 늘리는 '한강의 기적'을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투자해서 외국의 기술을 배끼면 된다는 식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가까워지면서부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키워진 재벌은 은행돈을 마구 끌어들여 채산성을 고려치 않고 온갖 분야에 투자, 화려한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결국 은행을 부실에 빠뜨렸다고 기사는 분석했다. IMF도 재벌체제와 금융기관의 부실한 경영을 문제삼았고, 이제는 마침내 재벌 해체를 요구하고 나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벌책임 여론이 대단히 약하다. 이것 역시 재벌의 언론사 직접 경영 또는 광고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에 기인하는 것일 터이다. 재벌은 이 비상사태 앞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 대량해고로 연명하려 하고 있다.³⁾ 70년대에는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보도가 통제되어 '외신에 의하면'이라는 지하통신이 위세를 부렸는데 90년대인 현재에는 재벌에 불리한 보도는 잘 나오지

3) 『중앙일보』의 손병수 기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함께 신문의 책임도 묻고 있다. OECD 회원국에서 IMF 구제금융 국가로 전락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은 환상유포죄, 단순증제죄, 진상외면죄, 대안부채죄, 관찰 소홀죄 등 다섯 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중앙일보』, 1997. 12. 3.).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않고, 재벌의 문제점도 '외신(또는 외국인 학자)에 의하면'이라는 간접화법으로 지적하는 상황에 이르른 것이다.

(3) 관차금융과 재벌 지배 하 금융기관의 부실운영

과거 30년 동안 은행과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은 기업에 대하여 저리의 산업자금 공급의 극대화에 주력하였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사후관리, 그리고 자금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심판자적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한국의 금융은 지금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미보장, 금융감독체계의 건전성 미확립,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은행은 자금 공급의 파이프라인에 불과하며,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인위적으로 정해진 저금리로 대출하는 창구 역할만 담당할 뿐, 기업 투자사업의 경제성이나 채산성에 관한 대출심사기능이 없었으며, 경영실패의 부실기업을 제재하는 심판자기능도 없었다. 이와 같은 은행부문의 과행적인 대출정책과 여신관리는 기업부문에 대하여 이익 경시, 외형 중시의 경영풍토를 조성하고 부채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성장전략에 맞추어 대기업에 대한 장기산업자금 공급에 주력해

왔을 뿐 기업에 대한 감시자와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일련의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 공개 촉진에 관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등 재무구조와 기업 경영행태의 개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재벌은 은행의 경우는 지분을 4% 한도에 제한받고 있지만 종합금융,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금융기능의 왜곡이 커졌다. 재벌은 지배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함으로써 과잉부신투자와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했고,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로 중소기업 발전을 억

압했다. 종합금융사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로서 정부는 95년에 투자금융회사를 종합금융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줌으로써 종금사가 단기외채를 끌어다가 기업의 시설투자자금을 대주는 무리한 경영을 하도록 조장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영이 크게 낙후된 것은 주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정부와 재벌이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부(제경원) 금융개혁안도 정부관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착함으로써 정경유착과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온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제경원은 한국은행의 권한을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협소한 영역으로 국한하고, 그 외 제2금융권과 외환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권한을 제경원에 남겨둠으로써 한국은행 독립을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금통위와 한국은행의 조직적 분리, 제경원장관의 제의요구권 인정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통화신용정책상의 한국은행 독립성도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현재의 금융감독은 정관계 인사가 금융감독권을 악용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감독체계 개혁안은 이러한 관행의 폐기 없이 감독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고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었다.

재벌들의 부도는 금융시스템을 크게 악화시켰다. 12월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여신이 2500 억원 이상인 대기업 중 한라그룹을 비롯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중이거나 화의를 신청한 11개 기업군에 대한 금융권의 총여신은 약 32조8,13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 여신은 한라그룹의 3조 364억원을 포함해 18조3,247억원에 이른다. 부도 기업군별 금융권 여신규모는 기아그룹이 9조4,752 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라 6조4,764억원 △한보 5조5,951억원 △해태 3조2,809억원 △진로 2조 2,848억원 △뉴코아 1조3,143억원 △대농 1조

3,011억원 △쌍방울 8,657억원 △삼미 8,469억원 △태일정밀 8,167억원 △한신공영 5,560억원 등이다. 금융권의 협조용자로 기사회생한 해태그룹 여신 3조2,809억원을 제외해도 이들 부도기업군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29조5,322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준으로 무수의자산(부실여신)이 9월말까지 은행권 28조원, 종합금융사가 3~4조원, 합계 32조원(GDP의 7%)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96년 말 수치의 두 배 가량의 규모이다. 동시에 주가의 급속한 하락으로 은행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 은행들의 순자산 가치도 떨어졌다. 이러한 사태들은 취약한 은행시스템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시장원리 부족과 가격 및 관리위험에 대한 경험 부족, 신중하지 못한 은행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로 인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들의 신용 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으며 해외자금 조달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여기에도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자본을 철수하자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였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마침내 외환위기가 온 것이다.

(4)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이번의 외환위기는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개방확대에 따라 심화된 측면이 크다. 1980년대에 생산의 국제화와 금융의 국제화(Globalization)가 급격히 진전되어, 1985년에 5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해외직접투자액이 1990년에는 2,5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고, 체무의 증권화 추세로 포트폴리오 투자도 1985년 750억달러 수준에서 1990년에는 2,1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으며, 1992년 국제자본조달 총액 4,582억달러 중 73%가 국제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었다. 국제은행 대출은

80년 3,240억달러에서 91년 7조5천억달러로 증가했는데 OECD국가의 GNP와 비교하면 80년 4%에서 91년에는 44%에 이르는 변화에 해당한다. 국제증권은 전액기준으로 80년 2,590억달러에서 91년에는 1조6,500억달러로 증가했고, 외환거래는 하루 거래규모가 94년에는 1조5천억달러에 이른다. 또한 1980년대의 자본국제화는 각국이 채권국이면서 채무국으로 되어서 1988년의 경우 선진국 간 상호투자지수가 0.85로 높고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0.21로 상당한 정도이다.

이러한 80년대 이후의 생산의 국제화와 금융의 국제화의 급격한 진전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했는데 핵심은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극히 불안정하게 된 것이다. 이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적 조절(global regulation)은 노동시장의 세계화와 동시에 본원통화를 관리하면서 화폐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적 조절 사이의 마찰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박복영, 1994).

금융국제화는 통화가치의 불안정, 경제적 불안정, 경제적 불안의 국제적 전파, 차입기회의 확대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였고,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위기관리능력을 악화시켰다. 거대한 규모의 단기 투자자금의 이동이 시장교란=활성화의 주범이다. 버블경제는 금융 국제화와 금융위기 간의 연계를 잘 보여준다. 금융의 자립화는 경기 순환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했다. 즉 과거에 비해 실물경제와 유리된 호황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역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자립화에 의한 호황은 금융국제화 자체에 내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떤 외적 계기에 의해서도 급격하게 금융위기로 전화할 수 있다. 1987년의 블랙먼데이, 1994년의 멕시코사태, 베어링스은행 사건은 국제금융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금융자본은 한 국가의 위기

를 야기하는 동시에 지구의 반대편에 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기도 한다. 금융의 자립화는 체계적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언제나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멕시코사태와 그에 뒤이은 국제금융혼란의 원인은 개도국경제의 악화가 아니라 자본의 국제적 과잉에 있다. 즉 선진국 시장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개도국시장으로 몰려들어 거품을 일으키고 이에 편승하여 이윤을 확보하였다가 미국의 고금리로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홀려들어가자 개도국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주식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투기적 자금의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이와 결합된 국민경제의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박병규, 1995).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자본운동의 자유화, 세계화가 급진전되었다.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관한 규제 완화와 개방화가 선진자본주의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까지도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개방화, 자본운동의 세계화는 이들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크루그만(1995)은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자유시장과 통화가치 안정이 경제발전에서 열쇠'라는 시각을 광범하게 수용하였지만 멕시코 사태는 이러한 입장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자유화정책을 열렬히 채택하고 선진국 자본들이 여기에 환호하면서 돈을 쏟아부은 이유는 투기의 메카니즘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음울한 1980년대로부터 경제전망이 약간 회복되자 제3세계 주식시장 투자자는 고수익을 올렸다. 그들의 성공으로 다른 투자자들도 뛰어들게 되었고, 가격은 치솟았다. 1993년에는 '떠오르는 시장의 투자기금'이 텔레비전과 대중잡지에 광고되었다. 금융자본은 각국 정부에 자유무역, 자유시장정책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정치개혁 계속전망으로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었

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개발도상국의 자유무역옹호자들은 자유무역을 금융적, 거시경제적 이득과 연결시킬 수 있었고, 이로써 국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무역과 인플레 억제의 동시추구 등 정책결합은 처음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경제적 이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확신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고, 경제적 성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나자 확신은 쉽게 환멸로 귀결되었고 파국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사태는 주목할 사례이다.⁴⁾ 80년대 후반부터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채무경감교섭과 함께 자유무역 및 통화가치 안정조치가 취해지자 1990년부터 자본이 멕시코로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자본이 유입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취에서 물가안정은 긍정적인 측면이었다. 멕시코에서 물가는 87~91년 평균 49%에서 94년에는 7%로 내려갔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같은 기간에 609%에서 4%로 떨어졌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첫째, 점진적인 물가안정 추구와 이를 위한 환율 고평가로 비용상승에 의한 수출 둔화와 수입 증가가 초래되었다. 둘째, 대규모의 자본유입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저조했다. 멕시코의 경우 1993년에 300억달러가 유입되었는데 1990~94년의 성장률은 2.5%에 불과했다. 셋째, 성장성과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고, 실업은 증가했고, 빈익빈현상이 심화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시장경제의 강화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해져서 최상층 10%가 차지하는 국민소득 뜻은 1984년 32.8%에서 89년 37.9%, 94년 41%로 상승한 반면, 최빈층 50%가 차지하는 뜻은 84년 21%에서 89년 17.5%, 94년 16%로 감소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을 허용한 1992년의 개혁조치로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해졌다.

4) 멕시코사태에 대한 것은 Krugman(1995), Jorge G. Castaneda(1996) 등을 참조.

요컨대 자유무역과 통화가치 안정정책을 채택했던 국가의 실질적 경제성과는 국제투자자들에게 돌아간 금융수익에 비해서 저조했다. 자유시장정책이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수출의 급성장을 가져다주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신의 위기는 불가피했다. 1993년에 성장은 둔화되었고, 실업이 상승했다. 성장둔화가 실질환율 상승을 초래했고, 이것이 다시 수출 성장을 저해했고, 수입을 촉진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멕시코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환율 인하로 대처하려 하였지만 그럴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는 난점이 있었으므로 정부지출 완화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투자자들은 폐소화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고이자율을 요구하였고, 이는 경제 침체를 초래하여 폐소화 평가절하의 필요성을 더욱 촉진했다. 그 결과 멕시코사태가 폭발한 것이다. 멕시코사태는 GNP의 8%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 폐소화의 고평가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여기에서 비롯된 외환 부족, 폐소화의 방어력 상실과 채무이행 능력 불안에 따른 외국자본의 대탈출이 도화선이 됐다. 외국의 핫머니가 대탈출하는 데도 이를 막을 외환도 부족했고 신용도가 떨어져 새로 빌려올 수도 없었다. 결국 폐소화가 폭락, 부도직전으로 몰렸다.

그리고 1990년대에 자본운동의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개발도상국 자본의 해외투자 확대는 개발도상국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발도상국 자본의 선진공업국에 대한 자본 수출은 판로 개척 및 기술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 수출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직접투자업체 유지 자체로는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고 기술습득 등 부수이익을 겨냥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분명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현지판매를 주로 하느냐, 제품가공에 의한 역수입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

자본수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잔존한 국내산업이 선진공업국에서와 같은 지식집약, 기술집약산업으로 중점을 이행하지 못하면 국내고용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제품 가공에 의한 본국으로의 역수입을 위주로 할 때 수입 확대로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위기가 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압력이 증대하자 정부는 경제를 외국상품과 외국금융에 개방하였다. 부동산투기와 서비스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였고, 이러한 사태는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기 시작하고 일본에 대한 섬유, 철강, 기계, 화학제품의 수출이 여타 저임금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점증하는 경쟁에 직면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일어났다. 1991~92년 무렵부터 무역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와 자본은 저기술품의 수출에서 고급기술품의 수출로 전환하기를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크루그만(1994)이 말한 바와 같이 요소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의 자원은 고갈된 반면 기술진보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성장국면으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결국 자본주의세계 분업체계의 약한 고리가 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어갔다. 1992년부터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하였는데 96년 4월 1일에 종목당 한도를 18%(공공법인은 12%)로 확대하고 1인당 한도는 3%에서 4%로 확대했다. 이러한 증시개방 확대에 따라 92년 증권시장 개방 이래 주식투자 자금유입액을 보면 93년 76억달러, 94년 85억달러, 95년 102억달러, 96년 124억달러(순유입액 44.5억달러)로 꾸준히 늘어났고, 92~96년 누계로 보면 총유입액이 416억달러, 주식매각에 의한 해외송금 유출액이 250억달러로 순

유입액 누계는 166억달러에 이른다. 1995년에 한국 경제는 WTO체제 원년을 맞이하여 경제개방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 OECD 가입으로 자본 이동 자유화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의 전진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산업의 약화와 거시경제 운용의 불안정(인플레이션, 투기축진, 환율 불안정 등)이 야기되었다. 1997년의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주식순매도가 8월 952억원, 9월 2,983억원, 10월 3,928억원 등으로 급증했고, 이 자금은 바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고 환율을 급등시켰다.

이렇게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한국의 경제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적 투자자본의 이동이 한국경제위기를 격화시키고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3. IMF 구제금융에 따른 영향

IMF는 지원을 요청한 국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들 국가들은 부실채권이나 경상수지 악화, 잘못된 금융체계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게 되고 IMF는 해당 국가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연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최근 사례로 멕시코가 있다. 지난 94년 폐소화의 폭락으로 위기를 맞은 멕시코는 즉각 IMF에 도움을 요청했고 2년여만에 멕시코 경제는 정상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멕시코와 달리 개인의 연출같은 비공식적 관행이 뿐리깊은 아시아에서는 IMF의 처방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IMF의 처방이 오히려 아시아의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빈부격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지원받은 국가가 반드시 회생하는 것은 아니다. IMF가

요구하는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해 많은 국가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냥기도 했다. 특히 실업증가, 세율인상 등으로 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큰 IMF의 프로그램은 해당국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켜 철저한 이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91년 급격한 시장경제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체계의 구조조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해 지난 95년 IMF로부터 약 63억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는 이후 엄격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뚫는 데 성공했으나 금융기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심각한 반발에 부닥쳐 지지부진했다. 러시아는 결국 지난해 약 100억달러의 추가지원을 받았으나 경제난으로 신뢰가 떨어진 보리스 옐친 정부는 철저한 구조조정에 실패, 최근 또다시 IMF에 손을 벌릴 처지에 놓였다.

몽골도 시장경제 도입과정에서 IMF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 이미 92~93년과 93, 96년에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올 7월 또 다시 4,500만달러의 추가지원이 결정됐다. 몽골 역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취약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세제개혁 등 근본적인 수술처방을 받았으나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프로그램의 철저한 이행을 미뤄 또다시 계속 IMF의 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대표적인 곳은 아프리카다. 대부분 IMF의 지도를 받는 아프리카 경제는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MF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IMF의 정책을 '살인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반감이 높다. 잠비아에서는 옥수수값 상승에 따른 소요가 발생했고 짐바브웨에서는 교육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케냐의 인플레이션은 세 자리 숫자에 이르고 있

그렇다면 IMF의 지원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들은 IMF의 처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IMF의 조치는 비교적 적절하다”며 “해당국이 얼마나 철저한 개혁조치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철저한 긴축을 요구하는 IMF의 요구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급격한 변화를 부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예산축소 같은 긴축정책보다는 환율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그 국가에 대한 대외신뢰를 회복한 후 순차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IMF 긴급자금지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IMF의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됐으며 정치 사회 문화 국민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간섭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 저성장 고실업의 거시경제운용

한국금융기관의 외화채무불이행 선언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IMF의 응자 조건으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등과 함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고도성장 노선을 걸어온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둔화와 실업자 급증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그동안 외부차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매년 7~8%의 성장을 하지 않을 경우 도산을 면할 수 없는 경제구조이다. 내년 성장률을 급격히 낮출 경우 재벌그룹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는 기업도산·경기악화·실업자 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1998년도 거시경제 운용목표는 실질성장을 3%, 소비자물가상승률 5% 이내, 경상수지적자는 국내총

생산(GDP) 1%(내년은 50억달러) 이내로 합의됐다. 98년 설비투자는 97년보다 16.5%나 감소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2%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6~7%로 늘어나면서 40만~5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 전체 실업자는 1백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업률 1%당 22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특히 은행과 기업의 대량감원이 불가피한 만큼 구조적 실업도 급증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예고된다.

IMF에서 요구한 내년도 통화정책은 원화폭락 압력을 억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4.3%)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긴축 그 자체다. 시중은행과 민간 기업체들이 벌써부터 유동성(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바로 내년도 통화의 초기축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IMF가 한국은행을 통해 통화를 관리하는 방식은 돈을 함부로 풀지 못하도록 한국은행 금고 열쇠를 장악하는 것이다. 골치 아프게 각종 통화지표(M2, MCT)에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은행권)에 지원되는 본원통화(RB)만을 통제하는 것이다. 본원통화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만을 점검하면 모든 통화지표들이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셈이다.

IMF는 우선적으로 올해 말과 내년 말 통화관리 목표만을 제시하고, 월별 통화관리 목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IMF는 올해 말 본원통화(잔액기준)를 지난 9월말(22조1,97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23조2,710억원으로 끌었다. 내년 한해 동안에는 올해 말 대비 9%만 늘어난 2조1천억원만을 추가로 공급, 내년 말 본원통화 잔액을 25조3,710억원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IMF의 뜻대로 통화관리가 이뤄질 경우 내년 말 총유동성(M3) 증가율은 지난 9월말 16.4%(추정치)에서 15.4%까지 줄어들고, 물가상승률은 5%에 머물게 된다(『조선일보』, 1997. 12. 8.) 이러한 통화긴축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시

중 자금난의 심화와 함께 중소기업 대기업의 연쇄도산도 예상된다.

환율제도는 현행 기준환율 ±10%의 변동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제자금 570억달러가 유입되면 원·달러환율은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질소득 저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물가상승폭을 5% 이내로 억제한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미 달러가치가 연초에 비해 30%나 뛰어올라 각종 생필품 인상 러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승용차 휘발유 가격이 내년 초엔 1천 원대로 경충 뛰어오른다. 기름보일려를 사용하는 대세대주택의 관리비나 택시 버스요금도 덩달아 인상될 전망이다. 지하철요금도 올릴 가능성성이 크다. 생활비 중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만 해도 월 7만여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입원자재 비중이 큰 종이류·식용유·밀가루 등 공산품들은 이미 이달중 10%대의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외식·음주비용도 더욱 치솟을 것이 확실하다.

집값은 약간 하락할 전망이지만 금리가 크게 올라 은행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용대출 금리는 연17%선에 육박하고 있어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기보다 금융기관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유리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물가 금리 폭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 분명하다. 자녀 1명당 3, 4개씩 사설학원에 보냈던 가정에선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일반 근로자들이 물가상승과 임금억제의 이중고 속에서 쏨씩이를 줄일 경우 식당 제과점 레코드점 꽂가게 등을 열었던 서민들도 찬바람을 맞게 된다. 95년부터 본격화한 명예퇴직 바람 속에서 회사를 떠나

가게를 냈던 소사장들은 소비생활의 거품이 끼지면서 상당한 매출 부진에 시달릴 전망이다.

그러나 IMF는 한국경제의 장래를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 ‘위험요소가 있지만 경제구조개혁에 성공해 IMF 자금을 상환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구조개혁을 잘 수행하면 성장률은 2000년에는 잠재성장률인 6%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폭은 97년 138억달러(예상치)에서 98년 23억달러, 99년 28억달러, 2000년 14억달러로 줄어든 뒤 2001년부터는 소폭 흑자를 기록하도록 경제운용방향이 잡혀 있다.

나. 재정긴축

재정정책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부담을 세수 확대 또는 지출 삭감으로 상쇄, 균형재정 또는 흑자재정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요구되는 7조원 조달을 위해 조세수입을 3조3,700억원 늘리고 내년 예산 지출은 3조6천억원 삭감하도록 했다. 국민들은 임금 동결과 대량 실업 속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가세율 감축대상 축소, 조세감면 축소, 특소세 교통세 관련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세수 확충을 위해 휘발유등에 특별소비세를 인상, 모두 1조3,800억원을 더 걷도록 했다. 또 경유 교통세를 올리고 한전이 사용하는 면세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여, 1조1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의 강습료에 부가가치세(10%)를 물리고(3,900억원), 기업과 개인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원천징수세율을 높이도록 했다(5천억원).

정부는 내년도 세출을 GDP의 1.5%(7조3천억원), 98년 중앙정부 예산의 10% 정도를 줄일 방침이다. 경부고속철도등 대형국책사업,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등 대통령 공약사업, 노인복지수당 등 사회복지 사업 등이 대폭 축소 조정된다. 공무원 임금도 동결이 불가피하다. IMF는 국방비지출의 삭감도 요구하였다. 3조6천억원의 세출삭감 방안과 관련, 일반행정 경비(5천억원), 지방양여교부금(9천억원), 공무원봉급(6천억원) 등 각종 경상경비를 2조원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건물 매입을 억제하고 민간 부문에 남는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당초 사용 예산의 1조6천억 원을 감축해야 한다.

IMF는 더 나아가 1999년에 1조8천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마련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회계사와 변호사,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더 물리도록 했다(1,300억 원). 법인세와 관련, 공익법인의 세금감면 혜택과 기업이 쌓은 각종 충당금의 손비 인정 한도가 줄어든다. 또 법인은 감면 혜택을 받아도 소득의 12%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한도가 더욱 높아진다. 공기업의 세율이 오르며, 기업 시설투자의 납세유예 조치도 줄어든다. 이러한 각종 조치를 통해 모두 1조 9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산이다. IMF는 이와 함께 사업소득세 공제 폐지, 각종 수당의 과세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추가로 5,800억원의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조선일보』, 1997. 12. 8.).

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1) 금융기관 구조조정

외환위기를 초래한 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다.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퇴출제도(폐쇄 인수 합병)를 마련한다. 이미 9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졌고, 은행도 정리 대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것은 물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전전성 감독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차별 경영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폐쇄나 인수합병 조치를 내리게 된다.

경영이 부실한 은행들은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해 살길을 찾거나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 간판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제일은행, 서울은행은 자구노력 미흡시 폐쇄될 전망이다. IMF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8%)에 미달하는 은행은 문을 닫도록 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해외차입금리는 오르고 8% 미만이면 외국에서는 은행 취급을 못 받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시중 및 지방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9.42%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밀어닥친 기아그룹 등 대기업들의 부도로 이 비율이 일제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은행들은 연말결산을 앞두고 이 비율을 높이거나 8%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초비상이다.

인수합병이 되면 국내은행끼리는 중복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합치는 것은 물론 인원도 대폭 줄여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해도 가혹할 정도의 구조조정이 요구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 분명하다. 합병당하는 은행은 지원의 2/3, 합병은행도 1/3을 감원할 것이란 예상이다.

(2) 금융개혁

금융개혁법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은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하며 이 기구에 부실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다. IMF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곳에 둬야 한다고 하여 통합금융감독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즉각 처리를 의미한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했다. 부실상태로 드러나면 곧장 정리 대상이 된다.

(3) 금융산업 개방

금융분야 진입 허용 일정을 앞당겨 98년 중반까지 외국 금융기관(은행, 증권)의 국내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대목이다. 내년초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은행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소유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가지면 국내 현지법인이고, 25~50% 미만을 확보하면 합작은행이다. 현재 국내에 현지법인은 없고, 합작은행은 미국 아메리카은행이 대주주인 한미은행이 있다.

정부는 96년 OECD에 가입할 때 외국 금융기관 현지법인을 98년말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에 앞당긴 것이다. 합작은행의 경우 지금도 진출을 막을 만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가 암묵적으로 승인과정에서 막아왔는데 앞으로는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50% 이상을 확보해 아예 현지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한미은행과 같은 합작은행으로 진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맞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현재 국내자본은 1인당 은행지분의 4%(전환은행 8%, 지방은행 15%)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에 명시돼 있다. 다만 재경원은 “합작은행·현지법인이 아닌 일반은행의 경우 국내인의 1인당 한도가 지금처럼 계속 4%로 둑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자본은 외국인이 2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합작은행의 지분경쟁에 뛰어들 수 있지만 외국인이 안 들어온 은행은 계속 소유할 수 없다.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회생

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해외점포가 부실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점포가 정리될 전망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 위축이 예상된다.

부실 금융산업의 대대적인 정비 외에도 단기 자본시장의 초기 개방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인수까지 허용함으로써 파장은 커지게 됐다. 이로써 금융산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빅뱅식 구조개편, 시장개방이라는 파도에 휘말렸다. 이 파도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금융과 산업이 급속하게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 첨단경영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금융사가 국내 금리의 1/3밖에 안되는 자금을 들고와 금융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많다.

(4) 금융시스템의 위기

IMF가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하면 공황상태에 직면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는 IMF의 자금지원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분간은 혼란과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 자금시장

IMF가 연 18%대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자금시장 경색은 6개월 이상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부도 위험이 커져 금융기관들이 자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데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자체가 정리 대상이어서 대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실세금리는 내년 1~3월중 최고에 달했다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6월 이후에는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시장에서는 현재 9개 종합금융사의 업무정지와 10개 종합금융사의 부도위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종합금융사는 연 3일째 3조원 이상의 은행 콜자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경제로 인해 자금시장 경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것은 기업과 금융기관 부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강도 높은 긴축 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자금시장이 경색의 차원을 넘어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콜금리가 25%로 치솟고, 기업어음 할인율이 24.5%에 달해 단기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장기금리 지표인 3년짜리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자금 흐름이 거의 끊겨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는 물론이고 금융기관들간에도 돈이 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자금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에 대해 정부는 산업, 국민, 주택, 조홍,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등 10개 은행으로 하여금 종합금융사에 3조8천억원의 협조융자를 하도록 하고 시중은행에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자금 지원기간만큼 부족자금을 지원해주는 특별대출을 실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응급조치일 뿐 금융권간의 신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4일 어음제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음이 부도나면 기업이 은행 당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현행 어음제도를 고쳐 부도가 나도 은행과 거래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경원도 6일 7개 지방은행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어음 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10년대 이래 유지돼온 어음제도의 뼈대를 바꾸는 획기적인 조처다. 이러한 조처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금융기관이 98년 6월까지 정리될 경우 하반

기 들어서는 금리 하향 안정이 예상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시장을 통한 외국 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금리의 하락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단기성 대규모 외환 유출이 있을 경우 내년에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나) 주식시장

정부와 IMF가 연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50%로 늘리기로 합의, 외국인 선호주를 중심으로 일단 활기를 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일 종합주가 지수는 내내 약세를 맴돌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오름세로 반전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주와 우량주의 주가 양극화현상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긴축에 따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내느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전망이다. 은행주도 선도은행과 부실여신이 많은 은행들의 주가는 엄청난 격차를 보일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조건으로 정부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됨으로써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인수합병(M&A)재료가 부각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단기의 고수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유입돼 시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성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계속돼 주식시장의 혼조국면이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해지 펀드의 자금이 들어와 금융시장을 어지럽힐 가능성에 대한 관리등 제반 법규와 규정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다) 외환시장

은행과 종합금융사들은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하루 하루 외화부도위기를 넘기는 실정이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IMF 자금이 들어오면 금융권이 극심한 달러 부족에

서 일단 벗어나기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외환 딜러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IMF의 지원을 받더라도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외환전문가들은 1달러당 1,200원선에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환율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라. 투자위축과 기업부도급증

(1) 산업별 전망

IMF는 1월에 시작되는 협상에서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의 과잉투자를 문제삼고 나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분야의 국내외 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또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유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시장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IMF로 인해 일반기계, 철강, 중전기기, 자동차, 섬유 등 내수비중이 높은 산업은 영향이 크겠지만, 반도체, 가전 등 수출비중이 큰 산업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장비의 80%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영향을 받게 된다.

◆ 자동차: 쌍용자동차가 대우그룹과 인수를 합의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 조정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선 다변화 조기 해제에 따른 일본차 진입, 재정-금융 긴축 정책, 대량실업, 성장을 저하 및 소비·투자 위축, 유가 인상, 자동차 유지비용 증가로 자동차 업계는 내년에 어려운 한해를 보낼 전망이다. 내수는 벌써 줄어 지난 11월중 전년대비 12% 급감, 재고가 쌓이면서 조업 단축이 심화되고 있다. 경공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내년도 자동차판매는 당초 전망치인 마이너스 7%를 넘어 20%까지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 조선: IMF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수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오는 2000년 중반의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과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중공업 이인성 전무는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선주측에서 중도금에 대해 국내은행 보증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의 복보증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유통업: 백화점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에 당황,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IMF체제에서 3% 이하 저성장은 백화점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롯데는 내년도 매출이 20~30% 가량 급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과거 1월말에 세우던 사업계획을 앞당겨 오는 11일까지 조기 확정,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세계는 내년도 역신장을 전망치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등 세 가지 가상 시나리오로 잡고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현대도 출점계획의 보류 등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잇따르고 있다.

◆ 건설업: 건설업계는 종금사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주택할부금융사 및 부동산신탁사가 신규 및 기존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전면 중단,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부득이 신규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무기 연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깔아 놓았던 자금 회수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긴축으로 건설업체의 숨통을 터주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대형 국책사업마저 위축될 전망이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게 됐다.

◆ 철강: 핵심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의 내수 감소와, SOC투자축소에 따른 건설 및 토목부문

위축이 국내 철강업체들에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포항제철은 “내년도 철강제 내수는 5.8%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부실기업 속출로 과잉설비가 대량 발생할 경우 철강제 수요의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 반도체업계는 전체 생산량의 95%를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3사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정도 오른 120억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에, 현대전자가 오레곤주 유진시에 진행중인 64MD램 공장 투자가 미무리돼 내년에는 1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설비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현지정부와 약속했던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2차 투자, 삼성의 오스틴 2차 투자는 모두 연기됐으며 동부전자의 반도체 투자도 3개월 정도 연기됐다.

(2) 재벌 대기업의 투자 축소

현대그룹은 8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외화수지흑자를 올해보다 40% 늘리기로 하는 한편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30% 줄이기로 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현대는 또 전 임원이 상여금 200%를 반납하는 등 각종 비용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사외이사제와 상근감사제를 확대 실시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 조정 및 임금 동결·삭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감원 외에는 대량 감원을 할 계획이 없으며 임금 부분은 각 계열사별 경영 여건이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색에 나섰다. LG그룹은 98년도 경영초점을 안정적인 자금 흐름 확보에 두고 당초 8조5천억원으로 잡았던 내년 투자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핵심사업인 반도체 투자부문도 대폭 축소하거나 미를 방침이고 수출채산성이 회복됨에 따라 계열사 수출 목표를 상향조정중이다.

대우그룹은 6조3천억원으로 잡았던 내년 투자(해외 포함) 가운데 해외투자는 늦추고 국내투자는 줄이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대우는 내년 상반기중 착공으로 한 인천 송도 대우타운 개발사업도 연기할 가능성 이 크다. 대우는 내년 수출목표를 올해보다 15% 늘어난 170억 달러로 확정하고 국내 전체임원의 30%인 250명을 해외로 돌려 해외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경그룹은 한계사업으로 지목된 (주)유공에라스토머 등을 정리하고 적자사업은 최고경영진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또 주요 그룹들은 해외투자사업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통화 긴축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초과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영국 윈야드복합전자단지에 모두 7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패스 TV 등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감안, 2차투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전자는 당초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에 4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내년말까지 14억달러만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면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64MD램 생산계획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우전자는 당초 프랑스에 유리벌브공장 냉장고공장 신축과 전자레이인지 공장 증설에 모두 2억9,2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지금조달의 어려움과 톤큰 이수 연기로 이해 전

도체부문은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3) 기업부도 급증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는 기업경영환경이 악화해 크고 작은 기업들의 부도가 훨씬 많을 것이다. 1997년 10월말까지 부도를 낸 업체는 전국에서 1만 2,502개에 달한다. 10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25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2월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아그룹 쌍방울 및 태일정밀 등의 어음부도 충격파로 10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0.12%포인트 오른 0.43%, 부도금액 3조 7,61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부도율은 82년 5월 이철희-장영자사건 당시의 0.32%를 훨씬 웃돌 뿐 아니라 72년 3월(0.44%) 이후 25년 7개월 만의 최고수준으로 경제규모로 보면 이번이 사실상 전국 아래 최고이다.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10월에 1,435개로 전달의 1,235개보다 200개가 늘었다. 매일 57개 기업이 좌초한 셈이다. 10월중 어음부도율은 서울이 전달보다 무려 0.14%포인트 높아진 0.38%였고 지방도 0.75%로 0.08% 포인트 치솟았다. 특히 부산에서는 우성식품 및 미화당의 부도로 부도율이 전달 0.73%에서 1.07%로 급등했고 인천도 바로크가구 및 훼미리 등의 부도로 전달 0.55%에서 0.91%로 뛰어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기업환경은 악화할 수밖에 없어 부도율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제3위 순위 한라그룹이 자금난에 몰린 데는 무엇보다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한리중공업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라그룹은 지난해 2월 전남 영암에 연 150만t의 건조능력을 지닌 조선소를 비롯한 산업기계공장, 플랜트 설비 등을 건설하는 데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99년도 일감까지 수주하는 등 영업이익면에선 호조를 보이면서도 과도한 금융부담으로 지난해만 478억원의 적자를 냈다. 중장비나 플랜트도 최근 동남아시아 경제침체로 수출이 어려워져 전반적인 경영 악화를 겪었다. 그룹 주력사업인 중공업부문이 부진을 보이면서 한라그룹의 96년말 현재 부채가 6조3,2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65%까지 올라갔다. 엄청난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한라그룹이 베릴 수 있었던 것은 형제그룹인 현대그룹이 국민투자신탁,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 매입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지원(1조원 정도)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마.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5) 일단 부도를 낸 기업은 완전 파산, 법정관리, 회의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처리된다. 부도 직전 법정관리나 회의를 신청해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나오면 어음 및 수표가 지급 제한되므로 선후만 바뀔 뿐 부도기업이다.

* 완전 파산할 경우: 기업주의 당좌거래계좌는 즉각 폐쇄되고 신용정보규정상 적색거래자가 된다. 기업주는 당좌거래는 물론이고 신용카드사용, 예금 및 대출 등 모든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낸 기업주는 형사처벌이 별도로 가능진다. 빚을 다 갚아도 ‘적색거래자’라는 기록이 3년 동안 따라다니 사실상 현금거래만 가능하다. 기업의 남은 재산은 모두 처분한다. 재산을 나눠 갖는 순서는 3개월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국세, 소액임차인, 담보채권자와 전세권자 중 시점이 앞선 사람, 부동산기압류권자, 상거래 채권자, 주주 등으로 부동산 기압류권자부터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게 상례이다.

IMF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재벌체제의 개혁도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①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포함) 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회계조작 등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②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를 개선한다. 상호지급보증 개선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며 국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그 타겟이다. 계열사 한개의 부실이 그룹의 부실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③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을 배제한다. ④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이도록 한다.

IMF자금지원에 따른 합의내용은 현 기업지배구조의 틀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제 기업주들은 자기 자금을 동원해 회사를 살리든가, 아니면 외부의 손에 기업을 넘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첫째,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으로 그동안 감춰진 우리 기업의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계열사 A에서 계열사 B로 파는 내부거래로 그룹의 매출을 2중 3중으로 부풀리고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비싼 값에 밀어냄으로써 국내본사의 매출과 순익을 확대하는 그동안의 편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부당 내부거래는 계열사로부터 장비나 기술 등을 도입할 때 경쟁업체를 차별하거나 가격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쳐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계열사에서 과다하게 발생한 이익을 다른 계열사로 분산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선경그룹의 경우 SK텔레콤이 이동전화와 무선

호출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다른 계열사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선경그룹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런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계열사간의 상호지분관계를 상계시켜 결국 우리 기업의 자기자본금이 낮아지고 이는 부채비율의 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손과 부실채권이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우리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결과 기업의 대외신용도는 더욱 낮아지고 기업활동은 위축될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상호채무보증 관행의 변화는 부도 도미노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지급보증을 줄이게 되면 보증을 받았던 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한계에 당면하게 된다. 재계는 지급보증 축소를 '자금난 속에 이뤄지는 새로운 투자'라고 부른다. 파생효과를 피하기 위해 두 회사를 합병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7년 4월 집계한 30대 재벌의 지급보증규모는 64조4천억 원으로 자기자본 70조4,6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가 98년 3월말까지 해소(나머지는 2000년까지 완전 해소)토록 한 자기자본의 100% 초과분은 24개 그룹 80개 계열사에서 6조7천 억원이다. 은행이나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재벌기업은 합병을 통해 양사가 합보증하고 있던 보증액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자금난과 관련해 자기자본 100% 초과분의 해소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온 재계는 이번 정부

방침과 관련해 '기업 부도가 줄을 잇는 초비상상태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 기업들의 목을 죄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셋째, 개별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과 세계 지원 폐지는 현재 한계상태에 다다른 기업들에게는 마지막 기댈 곳조차 치워버리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아처럼 산업은행의 출자 전환으로 회생을 시도하려는 기업들은 이제 꼼짝없이 파산이나 M&A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유사한 경우에 손을 쓰고 싶어도 이제 손이 묶이게 됐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경우 오너가 자기 돈으로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재평가 등을 통하는 방법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수단이 없다. 그러나 오너의 유동성 자금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산재평가도 이미 수차례 써먹은 데다 국내자산도 이제 디플레이션되는 상황이라 더이상 획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IMF는 기업의 차입경영을 아예 봉쇄하기 위해 '은행대출금의 상업성이 존중돼야 한다', '정부는 은행대출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합의내용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M&A를 통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간다면 우회적으로라도 은행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외국자본에게는 그룹계열사라는 명예도, 대기업이라는 뉴치도 별다른 이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재벌해체방안은 '기술적 이해문서' (Technical Note)에 수록, 일반에 공표하지 않을 방침인데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난 무리한 방식은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스템 정비과정에서 재벌의 과다차입, 상호지급보증, 오너경영인의 독단 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집단 내 특정기업의 부실화가 다른 계열기업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2000년까지 재벌의 계열사간 상

호지급 보증을 완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너경영의 독단을 막기 위해 소수주주 요구를 완화해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 채권자 등이 사외이사 감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회사정리법·파산법·상법으로 여러 갈래인 기업퇴출 관련제도도 단일법률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퇴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계는 '재벌해체론'이 "우리 현실을 무시한 주권침해"라는 주장 아래 전경련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반대논리를 펴나가고 있다. 전경련은 12월 3일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정체위 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갖고 "재벌기업은 한국경제 고유의 문화로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 재벌해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조실장들은 회의에서 "IMF가 재벌 해체를 요구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재벌해체설이 확산되는 데는 IMF를 등에 업고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체를 호도하려는 반재벌집단의 불순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요구대로 재벌기업을 해체한다면 국가경제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재계는 IMF의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요구의 이면에는 한국재벌기업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견제음모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줄곧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종 등의 과잉설비를 문제삼아왔고 그들 기업도 동구권 시장 등에서 한국기업의 공격적인 경영에 고전을 면치 못한 경험이 있는데 이 참에 재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주문을 하였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2차대전 후 미국이 일본에 진주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재벌 해

* 회의에 들어갈 경우: 주요 채권자들이 '기존 기업주와 경영진이 회사를 살려보라'고 여유를 준다. 기업주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그대로 살아남는다. 기업주의 금융거래는 꺼리는 은행이 많지만 채권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회사측 입장에서는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안이다. 그러나 채권자들과 지키기로 한 부채상환계획을 못지키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새로 신청하기도 한다.

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IMF의 재벌 개편 요구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우리 대기업들을 견제 또는 무력화 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 했다(『중앙일보』, 1997. 12. 4).

재계는 IMF가 주문해온 대기업의 과다차입 관행 근절,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계열사 전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등은 모두 대기업 활동을 치명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계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차입 위주 경영이 금융 부실을 놓으면서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IMF의 시각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벌체제는 한국 고유의 기업문화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야지 IMF등 외부 힘에 의해 일거에 바꾸려는 것은 혼란과 부자용만 낳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IMF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은 태국·멕시코 등 어느 나라에서도 IMF가 재벌해체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현상황은 기업체질의 개선을 논할 한가한 시점이 아니라며 반발한다.

재계는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으로 빠져나가는 한국제벌의 추진력을 원천 봉쇄하려는 게 IMF의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계시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제벌의 엄청난 생산력을 과잉공급을 놓고 이는 선진국 대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진국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중은행 몇 개를 정리하고 고집하는 것은 재벌 힘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으로 보아 은행의 파산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계 자동차업계가 한국의 설비증설과 해외직접투자를 경계해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럽업계는 한국의 전자 자동차산업이 수출은 물론 현지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데 대해 상당히 경계해 왔고, 한국 재벌이 자동차와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할 때 재벌의 몰락은 경제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관계업체들의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⁶⁾

미국 『뉴욕타임스』는 12월 5일 IMF의 자금지원과 관련,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일고 있다고 보도 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IMF를 배후조종, 한국시장을 개방하고 미국기업에 혜택을 주려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들은 10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신문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인용, 자금지원을 들러싼 협상은 전자·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경쟁관계인 한국 재벌들의 해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IMF 구제금융이 ‘경제주권의 상실’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악감정은 치욕적인 경험에 대한 회생양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계의 대응은 ‘극우 민족주의 논리’로서

6) 재계는 그러나 국제무역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국제규범등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삼성·LG·대우 등 주요 그룹들은 자체 개혁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자구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들은 주식시장의 조기개방 등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에 따른 ‘경영권 방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기업화하려는 노력으로 대주주의 지분을 낮춘 기업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경영권방어를 위해 자금을 주식에 묶어놓는 사태가 벌어지면 국내기업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무조건 주식시장 개방에 앞서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30대그룹에 대한 여신규제등 각종 규제를 풀어 앞으로 몰려 들어올 외국자금들과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선진국 자본들이 국내 재벌의 경영방식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재벌이 계열회사의 힘을 총동원해 과잉차입, 과다투자를 하면 해당 재벌의 경영 악화와 종업원의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과잉생산과 주기적 위기를 통해 선진국 자본과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IMF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될수록 주주권한을 중시하는 외국인들의 영향으로 경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외국인들은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산이 다른 계열사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재벌계열사간 내부자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결국 대주주가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독단경영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재계의 ‘미국을모른’은 일본에서 극우 국수주의자들이 대외군사행동권 박탈을 주권의 제약이라고 우기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벌을 부활하자는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것은 사이비 애국주의를 앞세워 자신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바. 고용 악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관련 핵심내용은 ‘유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조치와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IMF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파견사업체를 허용한다는 것 등이다. 기업의 도산과 정리해고의 확대 등으로 실업률은 현재의 2~3%에서 6~7%, 실업자 수는 45만여명에서 1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는 내년도 인건비를 올해보다 20% 깎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부에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3일 저녁 서울 힐튼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과 대외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노사협상에서 재계가 공동대응해 인건비 20% 삭감 방안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인건비 20% 삭감은 임금인상을 마이너스 20%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업이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을 20%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감원 규모에 따라 재계가 제시하는 임금인상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정리해고는 현행 판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 대해 민간고용알선사업 활성화 등 실업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근로자파견법은 지난 93년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심의가 보류돼 있는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올해초 총파업에涉及가는 사회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1,500여개 업체 22만5천여명 규모인 노동자 파견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직종도 경비, 청소 등에서 생산직, 사무보조직 등으로 퍼져나갈 전망이다. 노동계는 “현재 비정규직·임시직이 전체 고용시장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파견근로제는 기존 노동자를 밀어내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견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우려는 지나치다”며 “오히려 파견사업 활성화로 실직자 구제효과가 3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기능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시안이다. 지난 96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보험은 노사가 임금총액의 0.3%를 적립해두었다가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30일~21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 대상이 지금까진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95년 고용보험법을 만들 때 98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이 현재의 427만명에서 540만~550만명 정도로 늘어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법을 제정했던 95년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시점에서 영세기업에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력 재배치, 직업전환 훈련, 근로시간 단축, 장기실직자 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완전실업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불완전고용의 형태는 더욱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실업자의 1/3에 해당하는 신규실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 민주노총은 “국가위기에 직면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해야 할 시점에 노동자의 회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용불안을 위태롭게 만들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벌기업들은 재벌해체설이라는 충격파에 직면하고서 대기업의 연이은 대규모 감원이 반재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식하

고 감원보다는 임금 삭감이나 경비 줄이기 등으로 대처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한다. 12월 3일 삼성과 대우그룹이 감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표방하고 나선 가운데 현대, LG, 선경 등 다른 주요 대기업들도 실업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 감원을 최대한 자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대신에 임금삭감 또는 동결, 경비절감, 한계사업 정리,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감원효과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의 초기축경영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기아사태와 극심한 내수침체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이외에 대부분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감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계사업 정리와 인력 재배치 등에 주력키로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지만 인위적인 감원은 안한다는 것이 그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은 ‘감원인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신에 인력재배치, 경비절감, 신규투자 최대억제 등 구조조정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선경그룹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부 계열사에 대해 명예퇴직 등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당분간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감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비절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그룹은 긴급사장단회의에서 감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전임원의 임금을 15% 삭감키로 했으며 삼성그룹도 지난달 11월 26일 임원임금 삭감을 골자로 한 비상경영 혁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은 12월 3일 재벌그룹 기조설장 회의에서 또한 5년간 임금인상을 3% 이내 억제를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12월 3일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긴급 공문을 보내 ‘기업이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엄격한 해고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정리해고

등 대량 감원을 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혐의로 형사입건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해고사건에 사전 개입하지 않고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제소, 부당해고 판정이 났는데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개입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해왔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정리해고에 앞서 인력재배치 일시휴업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경련과 경총에도 공문을 보내 대량 실업과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업 증가의 여파

◆ 개인과 가정 파산 증가: 소득이 줄어도 소비는 소득 감소분만큼 줄지 않는다. 수입이 전혀 없어도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써야 하고, 다른 지출도 일시에 중단하기 어렵다. 돈이 떨어지면 빚을 얼마나 신용카드를 써서라도 소비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빚은 금융비용을 가중시켜 개인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고 결국 지불을 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 가정 대부분은 가장의 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인 만큼 가장의 실업은 곧 그 가정 전체의 소득원이 끊어지는 것을 뜻한다. 120만명의 실업자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480만명의 국민이 ‘가정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소득계층간 갈등 증폭과 범죄 증가: 실업 증가는 필연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실업자는 얼마 동안 자신을 탓하며 새 직장을 찾을지 몰라도, 급격한 실업 증가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고 생활 고가 기중되면 정치권과 정부, 기득권층을 질시하게 된다. 특히 부유층의 과시성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면 실업자를 더욱 자극해 소득계층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해, 실업자가 받는 경제적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 결국 생계유지형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의 고통을 발산하려는 충동적 범죄도 늘어난다. 실업자 가정을 둔 청소년은 의기소침해지거나, 갑자기 닥친 경제적 고통을 참지 못한 비행 청소년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0년대에 일어난 1·2차 석유파동으로 실업이 늘었던 선진국의 경우 사회범죄가 크게 늘었다.

◆ 학생운동 격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면 대학에 남는 학생이 늘고, 이들과 재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이 결과 학생운동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 외식업소 증가와 불황: 마땅한 기술이 없는 실업자가 쉽게 모색하는 새로운 생계 수단이 음식점이나 간이주점들이다. 이런 외식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는 그 반대다. 실업 증가와 실업공포감 확산, 임금 동결 또는 삭감으로 가정들은 우선 외식비 지출부터 줄인다. 외식업소는 늘어나지만 수요는 줄어 극심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으로 외식업소를 차렸다가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 노동자 사기 저하와 임시직 급증: 실업증가는 평생직장 개념을 회석시키고, 고용불안감을 높여 직장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의욕이 떨어진다. 이는 곧 생산성 저하로 연결돼 기업의 경영을 압박한다. 노동시장에서는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수요가 많아지는 계절에만 일하는 계절고용직, 일한 날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일당직, 시간제 근무직 등 임시직과 계약직 고용이 급증한다.

◆ 저성장 악순환과 조세마찰 심화: 실업 증가는 곧 가계소비 감소를 가져온다. 가계소비 감소는 기업의 매출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